

조사보고 93-14

#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朴相守

1993.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朴相守

1993.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 머 리 말

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은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的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 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地方의 貿易權限과 外貿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的 變化에 힘입어 中國의 輸出入規模는 78년부터 92년까지 年平均 16%씩 증가하여 현재 世界 11位의 交易國으로 成長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3년 이후 계속되는 對美貿易黑字로 美國과의 通商摩擦을 惹起하여 大幅的인 市場開放을 約束하는「中國政府와 美國政府間 市場接近에 關한 諒解覺書」를 지난 '92년 10월 10일 締結하였습니다. 그러나 中國이 이와 같이 市場開放에 轉向的인 立場을 취한데에는 1986년 이후 GATT에의 再加入을 推進하고 있어 輸入管理制度를 포함한 對外貿易體制的 改善이 不可避한 狀況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中國은 이미 本 諒解覺書에 따라 大幅的인 關稅引下와 輸入計劃의 縮小, 輸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約束·施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ATT 加入을 위한 事前 準備作業의 一環으로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등의 措置를 취한데 이어 '94년 1월 1일부터 單一管理 變動換率制度的 導入과 동시에 外換留保 및 上納制의 撤廢와 외환사용 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의 廢止를 決定하였습니다. 더욱이 中國政府는 '93년말 UR협상에서 채택된 각종 事案들이 GATT에 수용되는 95년 以前까지 GATT에의 再加入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까지 GATT 作業班에서 논의되는 각종 問題點의 해결에 보다 積極的으로 대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GATT 作業班에서 論議된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的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

은 西方側의 要求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94년 1월 1일부터 增值稅의 調整·引上和 消費稅의 新設 등으로 市場開放에 따른 自國市場의 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한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있어 중국의 兩面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中國의 市場開放과 관련하여 論議되고 있는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市場開放의 協商過程에서 나타나는 各國의 見解와 中國의 立場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中國의 自救策을 中心으로 整理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감이 없지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を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朴相守 研究員이 작성하였으며 本 內容은 작성자의 個人意見이며 當 센터의 公式意見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93.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目 次

I. 序論	9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11
1. 貿易業許可管理	11
가. 對外貿易企業 設立條件	11
나. 對外貿易機構	12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管理制度	17
가. 輸入計劃	17
나. 輸入許可證管理制度	18
3. 關稅制度	27
가. 關稅	29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32
4. 外換管理制度	39
가. 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39
나. 91年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44
5. 商品檢査制度	51
가. 法規上의 輸入檢査	52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54
다. 商品檢査機構	56
III.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59
1. 市場開放化作業의 背景	59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66

가. GATT加入協商과 市場開放問題 .....	66
나. 中·美 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	69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	71
IV. 結論 및 示唆点 .....	86

## 表目次

〈表 II-1〉 輸入許可證發給機關 .....	20
〈表 II-2〉 輸入許可證管理品目 .....	23
〈表 II-3〉 輸入許可證取消豫定表 .....	27
〈表 II-4〉 中華人民共和國輸入貨物許可證 .....	28
〈表 II-5〉 主要品目別 關稅引下內容(1992년 12월 31일 이후).....	33
〈表 II-6〉 主要品目別 關稅引下內容(1993년 12월 31일 이후).....	34
〈表 II-7〉 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 .....	37
〈表 II-8〉 公定換率과 內部決濟換率 .....	41
〈表 II-9〉 外換管理制度 變遷過程 .....	42
〈表 II-10〉 商品別 中央上納 및 留保比率 .....	45
〈表 II-11〉 中國의 換率과 輸出入 推移 .....	47
〈表 II-12〉 輸出入商品 檢査對象品目 變化推移 .....	52
〈表 III-1〉 中國의 GATT 加入協商 沿革 .....	63

## 圖目次

〈圖 1〉 商品檢査畢證의 種類 .....	57
------------------------	----





## I. 서론

中國은 정권수립후 상품경제와 계획경제에 기초한 고도집중적인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的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의 독점적인 무역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대외무역을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對外貿易部<sup>1)</sup>(1952년 9월 설립)가 업종에 따라 설립한 專業公司를 통해 직접 대외무역업무를 주관하였는데 이러한 체제는 중국이 戰後物資不足, 서방국가의 대중교역 봉쇄 그리고 당시의 주요 무역대상국이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sup>2)</sup>라는 정치.경제적 특수 상황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자력갱생 발전모델'이 서로 일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대외무역은 단지 계획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對 중국 禁輸措置철회를 계기로 70년초에 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중국의 대외교역량이 1973년에 들어서 1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중국의 대 서방교역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周恩來가 73년부터 76년까지 더 이상의 經濟惡化를 방지하기 위한 新政策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계속해서 고수해온 '自立更生'의 방침은 퇴색하고 석유와 석탄의 수출을 확대하여 서방과 일본의 기계설비를 적극 도입하는 국민경제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은래의 新政策은 1976년 天安門事件을 계기로 방치되어오다 1978년 12월 제11기 3中全會에서 등소평에

1) 對外貿易部는 1982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進出口管理委員會와 外國投資管理委員會, 對外經濟連絡部를 흡수통합하여 對外經濟貿易部로 개편되어오다 1993년 3월에 다시 對外貿易經濟合作部로 改編되었음.

2) 1959년 구소련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은 전체 무역액의 69.4%에 달했으며 1963년에는 45.0%에 달했음.

의해 공식적으로 『對外開放』의 경제건설방침이 거론 됨으로써 對外貿易體制는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체제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확대과 獨占的인 경영권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을 통해 外貿公司의 수입경영권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外換管理制度를 완화하여 외환유보비율을 확대하고 외환조절센터를 개설 함으로써 외무공사들로 하여금 외환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무역관리제도의 변화로 중국의 수출입규모는 78년부터 92년까지 년평균 16%씩 증가하여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통합현상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은 중국의 무역관리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1986년 이후 GATT에의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중국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中美間 諒解覺書 내용과 GATT 加入과 관련한 協商內容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을 제외한 2장에서는 중국의 수입관리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중미간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해각서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GATT 가입과 관련하여 수입관리제도를 포함한 각종 대외무역체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4장에서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향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 1. 貿易業 許可管理

####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對外開放政策을 채택한 '79년 이후 對外貿易體制改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각종 對外貿易企業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膨脹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行政과 企業의 自律權이 분리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經營能力도 여전히 劣勢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 中國政府는 1982년 對外經濟貿易部로 하여금 對外貿易企業의 設立에 대해 일괄적으로 管理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다<sup>3)</sup>. 아울러 각종 對外貿易企業의 設立에는 반드시 ① 行政과 企業이 分離된 自立經營의 獨立經濟實體로서 財務上으로는 獨立採算, 損益自己 責任을 취하고 있을것 ② 固定된 名稱과 完비된 定款을 갖추고 明確한 業務範圍와 輸出入商品目錄이 있을것 ③ 國家規定에 합치되는 資金, 고정된 營業場所 그리고 業務進行에 필요한 施設과 기타 物的條件을 갖추고 있을것 ④ 건전한 組織機構과 경영업무에 걸맞는 專門管理人員, 外國語人才 및 技術人員을 갖추것 ⑤ 판매에 적합하고 수요에 걸맞는 輸 出商品의 供給源과 輸出販路를 갖추고 있을것 ⑥ 국가의 輸出計劃任務를 지킬것 등 몇가지 조건들을 具備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主要 管理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各部 委員會나 國務院직속 企業의 사업부문이 설립한 對外貿易企業 및 각 지역의 그 分支機構에 대한 審査.批準 및 管理 ② 各省,自治區,直轄市 및 計劃單列都市가 설립한 각종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審査·批準 및 管理 ③ 새로 設立한 대외무역기업의 定款, 業務範圍, 輸出入商品目錄등에 대한 審査·決定

자료: 馬成三, 「中國의對外貿易制度」, 中國經濟, 1991.8, pp.26-27.

中國政府는 현재 對外貿易에 從事할 수 있는 企業을 國營 및 集體企業으로 局限하고 있지만 中外合營企業 및 委託加工, 샘플가공, 닉다운, 補償貿易등에 대해서는 私營企業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일부 對外貿易企業의 審査·批准權을 省級의 對外經濟貿易管理部門과 經濟特區나 經濟開放區所在 人民政府의 對外經濟貿易 主管部門에게 委讓하고있다. 國家가 統一的으로 經營·管理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輸出入商品에 대해서는 國家가 指定한 對外貿易企業만이 取扱이 가능하며 기타기업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中央에 所屬된 輸出入專業總公司를 제외한 其他 對外貿易企業의 輸出入經營範圍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첫째, 地方의 對外貿易企業에 대해

輸出入業務를 當該地域으로 국한하며, 對外經濟貿易部의 許可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他地域의 輸出入業務를 代行할 수 없으며, 地方의 對外貿易企業은 省外에서 經營하는 分支機構를 설립할 수 없다.

둘째, 生産企業과 企業聯合體에 대해

生産面에서 상당한 基礎基盤을 갖추고 있고 輸出商品이 一定金額에 달하거나 또는 生産技術密集型인 企業에 대해 그 輸出入範圍를 본 기업(또는 기업연합체)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輸出과 生産에 필요한 生産技術, 設備, 原材料, 補助材料 또는 備品の 輸入에 限해 局限시키고 있다.

## 나. 對外貿易機構

### 1) 對外貿易 管理部署

현재 中國의 對外貿易 管理部署는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第1級 管理部署는 對外貿易經濟合作部(이하 '貿易合作部'로 약칭)를 指稱하는 것으로, 對外貿易政策을 立案하며, 관련法規 및 指令式計劃의 施行을 監督하고, 省級 對外貿易公司의 設立을 審査·許可하며 對外

貿易公司의 經營權을 取消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第2級 管理部署는 각 省(自治區·直轄市·計劃單列市)의 經濟貿易廳(委員會)들로 省次元에서 貿易合作部가 제정한 政策을 執行하고 貿易合作部가 부여한 管理業務를 수행한다. 經濟貿易廳(委員會)은 貿易合作部の 下級部署가 아니라 省政府의 職能部署이고, 幹部の 任免權을 省政府가 행사하고 있다.

經濟貿易廳(委員會)은 貿易合作部に 業務狀況을 보고하나 具體的인 業務는 省정부의 指導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地方의 對外貿易公司는 貿易合作部보다 地方政府와 더욱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貿易合作部 또는 經濟貿易廳(委員會)은 '政企分離'의 原則에 따라 行政的인 役割만 수행하고 있으며 對外貿易公司의 具體的인 經營에 대해서는 크게 干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對外貿易管理에 있어서 한가지 特記할 만한 사실은 物資部, 機械部, 電子部, 商業部, 輕工業部, 化工部, 衛生部 등 國內生産을 管理하는 政府部署에서 관련 產品의 輸入과 輸出에 대한 審査 및 許可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 2) 對外貿易企業의 形態

對外貿易企業은 企業의 性格에 따라 ① 專門的으로 貿易만 全擔하는 企業 ② 企業이 가진 기존의 업무(주로 生産)를 추진하면서 同時에 貿易業務를 하는 企業 ③ 對外貿易과 관련된 諮問, 廣告, 運輸, 保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企業 등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中國內에서 貿易業에 從事하고자 하는 企業은 貿易合作部 혹은 貿易合作部가 權限을 委任한 각 地方(省, 自治區, 直轄市, 計劃單列市 및 經濟特區)의 對外經濟貿易 相關 主管部門의 許可를 얻은 후, 中央 혹은 各地方의 工商行政 管理部門에 登記를 마침으로써 法人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현재 對外貿易에 종사하는 企業은 國營企業, 즉 全民所有制 형태의 기업이 대부분이며 일부 集體所有制 기업도 이에 參與하고 있다.

對外貿易企業은 性格과 營業範圍에 따라 貿易專業總公司, 中央政府 工

業關聯部門 산하의 工業貿易專業總公司, 綜合貿易公司, 貿易服務公司, 直接 輸出入이 가능한 生産企業 혹은 企業聯合體, 地方貿易公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sup>4)</sup>

가) 中央貿易總公司(中央專業總公司)

貿易合作부에 소속되어 國民經濟에 直接 영향을 미치는 主要 商品의 輸出入을 주관하는 輸出入公司들로서, 각 地方에 分公司를 設置하고 업무 指導를 하고 있다. 中央貿易總公司로는 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中國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中國輕工業品進出口總公司, 中國工藝品進出口總公司,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中國機械進出口總公司, 中國五金鑛山進出口總公司,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國際招標公司, 備品配件公司, 技術貿易諮詢公司), 中國醫藥保健品進出口總公司 등이 있다.

각 公司들은 取扱하는 품목을 公司의 名稱에서 明確히 밝히고 있으나 서로 중복되는 품목도 있어 總公司들간에 경쟁적인 경우도 있다.

나) 中央 各工業部 산하의 貿易公司

中央의 工業部門別 主務部處 산하에 設立된 貿易公司로서 이들 기업들은 통상 關聯 製造工場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中央의 所屬 工業部로부터 工場에 대한 統制權限을 부여받고 있다. 中央 各工業部 산하의 貿易公司로는 中國絲綢進出口總公司, 中國器械設備進出口總公司, 中國航空技術進出口公司, 中國電子進出口總公司, 中國北方工業公司, 中國精密器械進出口公司, 中國船舶工業貿易公司, 中國科學器材公司, 中國冶金進出口公司, 中國長城工業公司, 東方科學儀器進出口公司, 中國建築工程總公司, 中國化工建設總公司, 中國煤炭進出口公司, 中國汽車工業進出口公司,

4) 地域情報센터, 「中國便覽」, 1993. pp.457-460, IPECK, 「對中國投資戰略과實務」, 1991.8.

中國石油化工總公司, 中國有色金屬進出口總公司 등이 있다.

다) 地方의 貿易總公司

각 地方의 對外貿易總公司是 地方貿易, 특히 地方의 輸出擴大를 위해 1980년부터 設立되기 시작하였으며 代表的인 것으로는 北京京華對外經濟貿易總公司, 福建省華福進出口公司, 廣州市對外貿易總公司, 上海市對外貿易總公司 등이 있다. 이들 公司는 이들지역 이외에도 天津市, 北京市, 廣東省, 福建省 등 대부분의 省·市에 設立되어 왔으며, 貿易去來 活動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점차 增大되고 있다. 各級 地方의 貿易總公司는 中央貿易總公司와는 달리 綜合貿易商社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中央政府가 取扱하는 品目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品目들을 輸出入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있다.

라) 直接 輸出入이 가능한 生産企業

상당한 規模를 갖춘 生産企業에 대해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를 輸入하거나 生産된 製品을 輸出할 수 있도록 自社製品關聯 輸出入 權限을 부여하고 있는데, 鞍山鐵鋼公司, 第二汽車(자동차)製造工場 등과 같은 大規模 國營工場들이 이러한 生産企業들로 각 省.市別로 수개씩 가지고 있다.

마) 工貿合資의 貿易公司

工業企業과 貿易企業이 共同 出資하여 設立한 貿易公司로서 中國燕山連合對外貿易公司등이 있다.

바) 生産·販賣가 一元화된 大型企業

生産, 國內販賣, 輸出業務를 일괄 經營하고 있는 企業으로 中國絲綢公司, 中國船舶工業公司 등이 있다.



사) 專門輸出聯合公司

中國磨料具出口(수출)聯營公司 등이 專門輸出聯合公司의 한 例로 여기에 參與한 공장들은 關係제품생산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出口聯營公司是 참가공장의 貿易을 代行하고 있다.

아) 貿易服務公司

貿易服務公司是 政府部門에 直屬된 것 혹은 學會, 協會, 團體 등이 설립한 것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廣告, 展示會 開催, 諮問 등의 각종 貿易關聯 서비스업무를 하고 있다. 中國對外經濟貿易咨詢公司, 中國國際經濟技術合作咨詢公司, 中國國際經濟咨詢公司, 中國國際廣告公司, 中國國際展覽中心,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中國旅遊服務公司, 北京市對外企業服務總公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各 地方의 經濟技術開發公司

地方의 經濟技術開發公司是 地方經濟를 발전시키고 外國의 先進技術과 設備를 導入하며 地方의 新商品을 輸出하기 爲하여 설립된 기업들로서 中國山東國際經濟技術合作公司, 中國上海對外經濟技術合作公司, 廈門市經濟技術協作公司 등이 있다.

이처럼 中國政府는 輸出入 資格과 權限을 엄격히 區分.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對外交易量의 增加와 더불어 市場經濟原理가 더욱 廣範圍하게 적용됨에 따라 對外貿易企業의 形態와 機能도 더욱 多樣해 질 것으로 보인다.

##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 가. 輸入計劃

計劃經濟를 爲主로 하고 市場經濟를 보조수단으로 삼는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채택하고 있는 中國의 輸(出)入計劃은 다른 經濟部門과 마찬가지로 指令性 計劃, 指導性 計劃, 市場調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指令性 計劃은 法的으로 強制성을 띠고 있어 반드시 計劃에 따라 施行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되는 製品은 주로 第1類에 해당하는 輸出入商品과 國民生活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指導性 計劃은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나 經濟調整을 위한 手段으로 第2類 輸出入商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市場調節은 政府의 干涉이 없이 완전히 市場機能에 맡기는 것으로 第3類 輸出入商品이 여기에 해당된다.

年度別 輸入計劃은 對外貿易權을 가진 企業이 연간 輸出計劃<sup>5)</sup>을 수립하여 政府의 調整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各級 政府의 關聯部署와 各省의 有關企業이 수립하고 國家計劃委員會와 物資部의 調整을 거쳐 國民經濟計劃과 外換支拂能力에 따라 全國的인 輸入計劃을 決定한 후 이를 國務院에 보고하여 該當年度의 國民經濟計劃에 포함시킨다. 輸入計劃은 다른 經濟計劃案과 함께 全人大 常委에 上程되어 審査·許可를 받은 후 國家計劃委員會와 貿易合作部에 下達되어 執行된다. 현재 指令性 輸入計劃은 總輸入額의 1/5까지 減少하여 穀物, 木材, 棉花, 鐵鑛石 등의 일

---

5) 수출계획은 수출입공사, 공업무역총공사, 각 省級 대외무역공사, 대외무역 경영 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등이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貿易合作部에 보고하면 貿易合作部가 이를 조정하여 전국적인 대외무역수출계획을 수립한다. 貿易合作部는 대외무역수출계획을 國家計劃委員會에 보고하며 조정작업을 거친 후 國務院의 심사·허가를 거쳐 당해년도 국민경제계획에 포함시킨다. 최종적으로 수출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全人大 常委에 상정되어 심사·허가를 받은 후 國家計劃委員會와 貿易合作部에 하달되어 집행된다.

부 輸入商品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縮小시킬 계획에 있다<sup>6)</sup>.

輸(出)入計劃은 分級別로 下達되어 貿易合作部가 輸出入公司와 工業貿易總公司에 하달하고 각 省의 對外貿易公司와 企業들에게는 經濟貿易廳(委員會)이 하달하는데 分期別로 이행상황을 審議하고있다.

####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1980년 以前의 對外貿易은 對外貿易部소속의 輸出入專業總公司 및 그 分公司가 輸出入 權限을 갖고 國家計劃에 따라 輸出入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輸出入許可證은 外貿公司에 대한 發給과 國家가 긴급히 必要로 하는 科教, 文體, 衛生物品の 輸入과 少量의 非貿易物品의 輸出에 대해 發給하는 정도의 매우 制限的인 役割을 해왔다. 그러나 對外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에는 外貿公司의 급속한 增加와 더불어 自主經營權의 擴大와 損益自己責任制의 확산으로 인해 對內的으로는 수출원자재의 購買競爭 현상이 나타나 輸出原資材의 購買價格이 上昇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過當競爭으로 인해 輸出價가 下落하는 한편, 耐久消費財의 大量輸出과 盲目的인 輸入現象이 나타났다.<sup>7)</sup> 따라서 國家進出口委員會와 對外貿易部는 1980년 6월 30일에 “出口許可制度的暫行辦法”을 제정하여 貿易專業公司가 輸出許可對象品目<sup>8)</sup>을 輸出할 때에는 반드시 輸出許可證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同年 8월 26일에는 “對外貿易進口管理試行辦法”, “地方對外

6) 金基洪/趙顯泰, 「中國의 GATT加入과 우리의 對應方案」, 産業研究院, 1993.4, p.60

7) 李乾亨, 「有關中國進出口許可證之沿革, 規定與相關條文」, 『中國涉外經濟法剖析』, 南京大學出版社, 1989.

8) 수출허가대상품목: ①수출국가에서 할당이 주어진 상품 ②대외무역부가 최저 수출가격을 규정한 상품 ③관련 부문에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상품 ④국제시장의 변화나 수출국의 정책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

貿易進口管理試行辦法”을 制定하여 모든 輸入貨物에 대해서 審査·批准의 절차를 받도록 하였다<sup>9)</sup>. 그 중 輸入制限品目에 대해서는 반드시 對外貿易部와 省級對外貿易局에 輸入許可證을 申請하도록 規定하였다.

현행 輸入許可證制度는 1984년 1월 國務院이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進口貨物許可制度暫行條例〉 및 그 實行細則의 規定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輸入許可證 管理對象品目を 수입하기 위해서는 輸入許可證(I/L)을 發給받아야 한다.

현재 輸入管理品目は 3가지로 大別되며 그중 1, 2類 品目이 輸入許可證(I/L)管理對象品目(53개품목: 표 II-2참조)에 속해 있다.

1類(일괄취급상품): 공급이 시급히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물자, 생활필수품 등과 같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주로 中央政府 산하 각 해당품목의 貿易總公司가 수입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상품

2類(추천상품):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가격변동이 민감하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차가 비교적 큰 대량으로 수입되는 품목들로서 각 상품별로 輸出入 商會 또는 協會를 설치하여 두고, 同協會나 商會의 회원으로 등록된 貿易企業에게만 해당 협회등이 輸入할 수 있도록 推薦하는 상품

3類(자유취급상품): 1, 2류를 제외한 품목(즉, 국가계획관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수입권한이 있는 기업은 모두 수입 할 수 있는

---

9) 당시 적용된 輸入許可證對象品目は 20종으로 주로 내구성소비재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후 1984년 1월 10일에 國務院은 “進口貨物許可制度暫行條例”를 제정하였으며, 同年 5월 15일에는 對外經濟貿易部(대외무역부가 1982년에 대외경제무역부로 개편)와 海關總署가 “進口貨物許可制度暫行條例施行細則”을 제정하여 모든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범위는 대외경제무역부가 확정·조정하였으며 84년에는 30종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후 계속 조정되어 1987년에는 45종, 1989년에는 53종으로 늘어나 耐久性消費財와 重要 原資材, 국내에서 공급가능한 機電製品 등에 대해 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 〈丑 II-1〉 輸入許可證 發給機關

對外經濟貿易部	對外經濟貿易部配額(割當)許可證事務局에서 발급
對外經濟貿易部特派員 辦事處	天津, 大連, 上海, 廣州, 深圳, 南京, 福州, 青島, 鄭州, 武漢 南寧, 成都, 西安, 杭州駐在 特派員辦事處에서 발급
省級對外經濟貿易委員會	北京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上海市대의무역위원회 天津市대의무역국, 河北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山西省대의경제무역청, 內蒙古自治區대의경제무역청 遼寧省대의무역국, 大連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瀋陽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吉林省대의무역위원회 長春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黑龍江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哈爾濱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江蘇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南京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浙江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寧波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安徽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福建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廈門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江西省대의무역청, 山東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青島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河南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湖北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武漢市대의무역관리위원회 湖南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廣東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廣州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深圳市무역발전국 海南省상업무역청, 廣西壯族自治區대의경제무역위원회 四川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省島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重慶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貴州省대의경제무역청 雲南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西藏自治區대의경제무역청 陝西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西安市대의경제무역위원회 甘肅省대의경제무역위원회, 青海省대의경제무역청 寧夏回族自治區대의경제무역청, 新疆維吾爾族自治區대의 경제무역위원회 등에서 발급

상품 以外에 貿易方式이 다른 三資企業, 補償貿易, 委託加工貿易, 리스 관련의 輸入에 대해서는 別途規定에 근거하여 취급하고 있다.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舊名:對外經濟貿易部)가 發表한 93년 제1호 公告에서 따르면 輸入許可證發給機關과 輸入商品의 審査·批准 및 發給 節次는 다음과 같다<sup>10)</sup>.

1) 輸入許可證發給機關

輸入許可證發給은 輸出許可證發給과 마찬가지로 對外經濟貿易部, 特派員辦事處, 省級 對外經濟貿易委員會(自治區, 直轄市, 計劃單列市포함)에서 品目別(수입허가증관리품목참조)로 輸入許可證을 발급하고 있다. 주요 발급기관은 <표 II-1>과 같다.

2) 輸入許可證 發給節次

輸入許可證 對象品目에 대한 輸入許可證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國家의 기준을 거쳐 輸出入經營權을 획득한 外貿公司, 工貿公司, 國際經濟技術 合作公司, 生産企業, 外國投資企業들이 上述한 各급 發給기관에 國家行政 主務部署가 인준한 輸入有效證書를 발급받아 輸入許可證 申請書와 함께 첨부해야한다. 따라서 企業은 國家행정 주무부서가 인준한 有效證書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國家행정 주무부서의 認准證書는 상술한 各급 發給기관이 輸入許可證을 발급하는 근거가 된다.

輸入有效證書를 발급하는 國家행정 주무부서는 國家計劃委員會, 對外經濟貿易部, 國務院經濟貿易辦公室, 國務院機電設備進口協調辦公室로 이들 부문은 각 부문별 수입허가증상품의 審議·認可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문이 審査·批准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國家計劃委員會가 審査·批准하는 품목: 강제(양철포함), 강철조

10) 「中國經濟新聞」 제15기, 1993.4.26.

각, 폐선, 천연고무(천연유지포함), 목재(코크스나무제외), 합판, 양모, 화학섬유, 펄프, 석유, 식용설탕, 화학섬유모노머, ABS수지, 합성고무, 폴리카보넛, 청산나트륨, 농약, 연초제품, 담배필터, 초산인조섬유사(담배용), 코발트 및 코발트염, 자동차타이어(페타이어포함), 민용폭파기자재, 화학섬유생지, 화학섬유복장, 南藥

② 對外貿易經濟合作部에서 審査·批准하는 품목: 커피 및 그 제품, 위탁판매 담배

③ 國務院經濟貿易辦公室에서 審査·批准하는 품목: 탄산음료(완성품 및 농축액기스포함), 조립가공설비

④ 國務院機電設備進口(수입)協調辦公室에서 審査·批准하는 품목: TV브라운관, 자동차, 자동차주요부품, 자동차기중기, 민용비행기, 기류방직기, 전자현미경, 전자색도분사기, 단층촬영장치, 전자계산기 및 주변기기, 녹음 및 비디오테이프 복제기(복제속도1:8이하), VTR, 에어컨 및 압축기, 냉장고 및 압축기, 세탁기, 녹음기, TV, 오토바이, 오토바이 주요부품, 카메라, 카메라몸체, 손목시계

### 3) 輸入制限 取消計劃

중국정부는(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지난 92년 12월 31일부터 플라로이드카메라에 대한 輸入許可證 및 輸入割當 管理의 취소와 함께 示波器(오실로그래프)에 대해서도 輸入制限을 撤回하고 수입절차를 거쳐 輸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교환기의 수입제한을 철회하여 國際入札方式을 통해 入札結果와 事業妥當性을 토대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일회용 현상감광재료의 輸入割當을 이미 철폐하였다.<sup>11)</sup>

중국정부의 이와같은 輸入制限 緩和措置는 1992년 10월 10일 中·美 간에 체결한 〈中華人民共和國和美利堅合衆國政府關於市場准入的諒解備

11) “我國逐步取消部分商品的進口限制”, 「國際商報」, 1993.3.21.

(표 II-2) 輸入許可證 管理品目(1992년 7월현재: 53종)

NO	품 목	중문표기	수입허가증관리기관		품목내용	
			유효증서	수입허가증		
1	강재	鋼材(93)	☆	★◆	브레이크포함	
2	빌레트	鋼坯(93)	☆	★◆		
3	폐강	廢鋼(93)	?	★◆		
4	폐선	廢船(93)	☆	★◆	천연고무, 라텍스	
5	천연고무	天然橡膠	☆	★◆		
6	목재	木材(94)	☆	★◆		원목, 일차가공목재 침목, 콜크
7	합판	膠合板(94)	☆	★◆		원모, 洗淨毛, 毛絲등
8	양모	羊毛	☆	★◆		
9	화학섬유#	化學纖維	☆	★◆		
10	펄프	木漿(94)	☆	★◆	원유, 석유제품, 가솔린, 디젤유등	
11	석유	石油(94)	☆	★◆		
12	설탕	食糖	☆	★◆		폴리에스테르
13	화섬모노모# #	化纖單體	☆	★◆		
14	초산인조섬유사	二醋酸纖維絲束(94)	☆	★◆	담배규격	
15	자동차	汽車	●	★◆	소형승용차, 중소형 여행용자동차, 각종 트럭, 대형버스등	
16	자동차주요부품	汽車關鍵部件(95)	●	★◆	엔진, 차체등	
17	담배제품	煙草制品	☆	★	비스코스섬유, 동암모니아섬유, 나일론, 비닐등	
18	민용항공기	民用飛機(93)	●	★		
19	화학섬유#	化學纖維(94)	☆	◎		
20	화섬모노모# #	化纖單體	☆	◎	테레프탈, 폴리프로 피렌, 나일론66 어망등	



〈표 계속〉

NO	품 목	중문표기	수입허가증관리기관		품목내용
			유효증서	수입허가증	
21	ABS수지	ABS樹脂(94)	☆	◎	
22	합성고무	合成膠(94)	☆	◎	
23	폴리가보닛	聚碳酸脂(93)	☆	◎	
24	청산나트륨	氯化鈉(94)	☆	◎	
25	농약	農藥(96)	☆	◎	
26	담배필터	煙濾咀(94)	☆	◎	
27	커피및 그제품	咖啡及其制品(93)	★	◎	
28	코발트 및 코발트염	鈷及鈷鹽(93)	☆	◎	
29	자동차타이어	汽車輪胎	☆	◎	중고타이어
30	민용폭파기재	民用爆破器材(94)	☆	◎	각종폭약, 도화선등
31	화섬생지	化纖布料	☆	◎	타이아코드, 부직포
32	화섬복장	化纖服裝(94)	☆	◎	혼방, 닛트복장
33	남방생약원료	南藥(93)	☆	◎	호방, 해마등 22종
34	탄산음료	碳酸飲料(96)	●	◎	
35	TV브라운관	電視機顯像管(93)	●	◎	
36	트럭크레인	汽車起重機	●	◎	
37	공기精紡機	氣流紡絲機	●	◎	
38	전자현미경	電子顯微鏡	●	◎	
39	전자분색기	電子分色機	●	◎	
40	단층진단장치	斷層成像裝置(94)	●	◎	CT촬영기, 자기공명 진단기등
41	컴퓨터	電子計算機(94)	●	◎	
42	녹음 및 비디오 테잎복제기	錄音錄像磁帶複制機	●	◎	
43	비디오레코더	錄(放)像機	●	◎	자기헤드, 드럼등
44	복사기	複印機(95)	?	◎	
45	에어콘	空調器(94)	●	◎	
46	전기냉장고	電冰箱(94)	●	◎	
47	세탁기	洗衣機(94)	●	◎	용량 6kg이상
48	녹음기	錄音機	●	◎	
49	TV	電視機	●	◎	투영식TV, 폐쇄회로 TV, 14인치이상모니 터, 액정TV
50	오토바이	摩托車	●	◎	2륜, 3륜오토바이, 신체장애자용오토 바이, 스노모빌등
51	오토바이이부품	摩托車關鍵部件(94)	●	◎	엔진, 프레임
52	카메라	照像機	●	◎	
53	카메라몸체	照像機機身	●	◎	
54	손목시계	手表	●	◎	

〈표 계속〉

NO	품 목	중문표기	수입허가증관리기관		품목내용
			유효증서	수입허가증	
55	가공조립설비	組裝加工設備(93)	●	◎	34종=1.칼라및 흑백TV조립생산라인 2. 라디오가세트조립생산라인 3. 가정용냉장고조립생산라인 4. 가정용 세탁기조립생산라인 5. 룸에어콘조립 생산라인 6. 오토바이조립생산라인 7. 경소형자동차조립생산라인 8. 흑 백브라운관조립생산라인 9. 탄소피막 및 금속막저항기생산라인 10.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생산라인 11. 480이하 디지털 마이크로과통신설비 생산 라인 12. 대리석 판재가공생산라인 13. 다다미생산라인 14. 플라스틱부 대생산라인 15. 세탁기용 용수철타이 머생산라인 16. 맥주 및 음료 금속용 기층전생산라인 17. 양복생산라인 18. 나이론화스나생산라인 19. 폴리에틸 버튼생산라인 20. 에어콘용컴프레셔 및열교환기생산라인 21. 폴리에스텔 섬유방사생산라인 22. 인스탄트라면 가공생산 23. 가구생산라인 24. 광섬 유,광케이블 생산라인 25. PCM3차이하 병렬접속설비 조립생산라인 26. 전화기조립생산라인 27. 칼라TV부 품조립 생산라인 28. 콘덴사 조립생 산 29. 프린터 기관생산라인 30. 금속외사슬생산라인 31. 플라스틱절연 시내전화생산라인 32. 변압기용규소 강판절단라인 33. 프리코드감광(PS) 판생산라인 34. 농축과즙생산라인

註 : 1) 地方무역공사가 자기보유의화로 수입하는 경우 NO1-14는 특과원판사처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NO15-16는 경제특구 및 외국인투자기업,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로부터 기증받은 경우 특과원판사처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2) #, # #는 同種異品으로 세부품목은 품목내용 참조.
- 3)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품목의 수입허가증 취소계획년도로 당해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 세부품목내용은 〈표 II -3〉 수입허가증 취소예정표에 기술.
- 4)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 ●:국무원경제무역공관실 •:국무원기전설비진구협조관공실 ◆:특과원판사처 ◎:성급대의경제무역위원회

자료 : 『日中貿易必携』 1993, 中國經濟新聞第16期(1993年 5月 3日)에서 요약정리.

忘錄<sup>12)</sup>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5-6년내에 輸入許可證 및 輸入割當 등의 輸入制限을 撤廢 또는 縮小하기로한 備忘錄의 合意內容에 따라 중국은 일부 국내의 幼稚産業保護를 위한 許可證管理를 제외하고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許可證 對象品目を 대폭 縮小할 것으로 보인다.

本 備忘錄에는 중국의 貿易制度 運營에 관한 몇가지의 중요한 義務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1) 중국정부는 輸出入制度의 운영에 관한 모든 法規, 規制, 政策, 指導를 공개한다.

(2) 엄밀한 예정표에 따라 중국측의 割當制, 輸入制限措置, 輸入許可要件, 輸入管理措置의 대부분을 철폐한다.

(3) 중국은 특정 농산물, 화학제품, 철강제품, 사진필름제품, 즉석카메라, 기계, 화장품, 과자류, 전기부품등 美國企業의 광범위한 輸出品에 대한 關稅를 대폭 引下한다.

(4) 중국정부는 판매, 마케팅 기회에 관한 商業情報(수출업자가 지금까지 入手할 수 없었던 정보)를 공개한다.

(5) 중국정부는 수입대체 대책의 채택과 수입허가요건으로서의 기술 이전이나 대중투자의 요구도 실시하지 않는다.

(6)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요건을 논의하는 專門作業班을 창설한다. 중국은 농산물 리스트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으로 부당한 제한조치를 12개월내에 철폐한다.

12) 중국시장개방합의에 관한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발표문, 1992.10.10 참조 (부록)

〈표 II-3〉 수입허가증 취소예정표

一. 1993년 12월 31일 이후
1. 鋼材 2. 빌레트 3. 廢鋼 4. 廢船 5. 南藥 6. 코발트 및 코발트염 7. 폴리가보넛 8. 커피 및 커피제품 9. 민용비행기 10. 34종의 생산가공설비 11. 과일 12. 흑백TV 브라운관
二. 1994년 12월 31일 이후
1. 화학섬유의류 2. 맥주 및 포도주 3. 精製植物油 4. 필프 5. 목재 6. ABS수지 7. 청산나트륨 8. 민용폭파기재 9. 합성고무 10. 전기냉장고 11. 세탁기 12. 연초제품 13. 담배필터 14. 초산인조섬유사 15. 합판 16. 석유 17. 폴리에스텔 및 아크릴섬 유 외의 화학섬유 18. 화공품일부 19. 컴퓨터 및 외부설비 20. X線機(CT촬영기) 및 자기공명진단설비(MRI) 21. 4천kcal이상의 에어컨 22. 5천w이상의 制冷壓縮機 23. 배기량 1천cc이상의 자동차용 피스톤엔진
三. 1995년 12월 31일 이후
1. 복사기 2. IC회로 3. 일반사진기용 필름 4. 기타화공품 5. 기타식물유 6. 기타술 7. 제냉장치가 없는 에어컨 8. 자동차하체 9. 자동차구동축
四. 1996년 12월 31일 이후
1. 농약 2. 탄산음료

자료 : 「國際商報」, 1993.3.29

### 3. 關稅制度

1980년대 이전에 中國에서의 關稅는 단지 政府의 주요 收入源중 하나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 對外貿易量의 증가와 國家對外貿易計劃項目의 감소에 따라 輸出入의 調節機能과 國內産業의 보호기능으로서 그 機能과 役割이 증대되었다. 1980년에 中國은 對外貿易部 關稅局을 關稅總局으로 승격(部級으로 승격)시켜 國務院에 傘下에 두고 關稅政策과 法律, 規則의 制定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2년에는 關稅總協과 關稅協力理事會(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加入하여 關稅運用方式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으며 1985년 3월 7일에는 “進出口關稅條例”를 制定·公布하였다. 1987년에는 財政部の 關稅稅率委員會를 國務院산

〈표 II-4〉 중화인민공화국수입화물허가증

1. 中國對外交單位：編碼			4. 進口許可證編號：		
2. 申請單位：部，委 省，市，區			5. 許可證有效期：		
3. 使用單位：部，委 省，市，區			至 年 月 日止		
6. 商品用途：			9. 進口國別(地區)		
7. 外匯來源：			10. 商品原產地：		
8. 貿易方式：			11. 到貨口岸：		
12. 商品名稱：			商品編碼：		
13. 商品規格·型號	單 位	14. 數量	15. 單位( )	16. 總值( )	17. 總值折美元
18. 總計					
19. 備註：			20. 發證機關蓋章		
			發證日期：年 月 日		

하에 두고 「關稅稅則委員會」로 改編하는 同時에 同年 1월 22일 全國人民代表大會 19차 常任委員會에서 채택된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을 國家主席令 第55號로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기존의 “中華人民共和國暫行海關法”은 폐지)함으로써 中國의 關稅制度는 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가. 關稅

中國의 關稅制度를 制定, 審議, 施行하는 政府機構는 國務院 산하의 關稅稅則委員會로서 國家計劃委員會, 貿易合作部, 機電部, 財政部, 商業部, 物資部, 國務院 法制局, 國務院 經濟調節辦公室, 海關總署, 國家物資局 등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關稅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은 國務院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枝葉的인 稅率調整은 關稅稅則委員會가 담당하고 있다.

關稅稅則委員會는 매 分期마다 한 차례 이상 회의를 召集하며 關稅세칙을 修正해야 할 경우, 國內의 生産部門과 使用部門 또는 對外貿易部門이 修正案을 제출하면 關稅稅則委員會에서 이를 검토한 후 國務院의 承認을 거쳐 修正案을 결정한다. 生産部門에서는 國產品의 保護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關稅세칙위원회는 調查·審議하여 妥當성이 입증되면 國務院에 이를 제출하여 보다 높은 關稅率을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關稅관련 주요 법규로는 ‘中華人民共和國 關稅法’, ‘中華人民共和國 輸出入關稅條例’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을 적용하고 있다<sup>13)</sup>.

첫째, 國家經濟와 國民生活에 꼭 필요한, 그러나 國內에서 生産이 不可能한 輸入品에 대해서는 關稅를 免除하거나 低率의 關稅를 부과한다.

둘째, 원자재의 關稅率은 半製品 혹은 完製品 보다 낮게 책정한다.

셋째, 國內에서 生産이 不可能하거나 혹은 品質이 일정한 水準에 到達하지 못한 機械設備 및 計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部品の 關稅率은 完製品보다 낮게 책정한다.

넷째, 國內에서 生産이 可能하며 國家經濟와 國民의 生活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關稅율을 적용한다.

13) GATT, SPEC(88)/ADD.4/REV.1, p.12.

다섯째, 국내에서 生産, 供給이 可能하고 自國産을 保護할 需要가 있는 제품은 關稅율을 보다 높게 책정한다.

여섯째, 輸出을 增大하기 위해서 大部分의 輸出商品에 대하여 輸出關稅를 免除한다. 但, 國際市場에서 需要가 制限되어 있고 競爭이 치열한 商品과 수출을 制限할 需要가 있는 몇몇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輸出關稅를 徵收한다.

중국은 현재 複合關稅制度<sup>14)</sup>를 실시하고 있어 중국과 關稅協定을 맺고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優惠關稅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關稅協定을 맺고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優惠關稅率 보다도 높은 關稅율을 적용하는 普通關稅率을 적용하고 있어 差別的인 關稅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 서명한 ‘大韓貿易振興公社와 中國國際商會간의 貿易協定’<sup>15)</sup>을 근거로 優惠關稅率을 적용 받고있다.

현재 中國이 채택하고있는 商品分類法은, 1992년 1월 1일부터 HS (Hamorized Co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分類法(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일명 協調制度)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총21類 91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21개의 品目에 대해 각각의 關稅率을 賦課<sup>16)</sup>하고 있다. 輸入禁止品目<sup>17)</sup>을 제외한 關稅對象品目的 稅率은 單純

14) 복합관세제도란 동일상품에 대해 2종이상의 관세율이 제정되어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관세로, 관세협정국에 대해서는 협정적 관세율을 적용하고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최고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관세를 말한다.

15) 본 협정은 노태우대통령의 訪中(1992. 9.27-30)기간인 1992년 9월 30일에 정부간 公式協定으로 재 체결되었음.

16) 중국은 從價稅(ad valorem duties)를 채택하고있으며, 수입제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7) ①각종무기, 탄약, 폭발물품 ②무선전파발신기 및 기타 주요 기자재 ③인민폐(화폐협정 또는 의정서에 의한 반입은 예외) ④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해가되는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영화, 오디오·비디오테이프 등 ⑤맹독성독약, 마약, 아편, 몰핀, 헤로인 등 ⑥위험한 병원 및 해충을 보유한 동식물 및 그 제품 ⑦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수입되어 전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식품 ⑧국가가 수입금지로 규정한 기타물품.

平均關稅率의 경우 39.9%, 加重平均關稅率의 경우 21.9%<sup>18)</sup>로 先進國의 4~5%, 開途國의 13~1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一部品目에 대해서는 輸入抑制를 목적으로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關稅率의 適用範疇를 보면 전체 6,321개의 關稅品目中에 약 2%에 해당되는 125개 품목에 대해서는 無關稅를 適用하고 있으며, 약 38.4%에 해당되는 2,4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30%의 關稅율, 약 28.4%에 해당하는 1,7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0~60%를, 전체의 23.4%에 달하는 1,479개 품목에 대해서는 60%이상의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中國政府는 GATT加入과 관련하여 1992년 1월부터 원자재와 농기계 등 225개<sup>20)</sup> 품목의 關稅를 引下(平均關稅率 45%→30%)하고 국제적으로 通用되는 HS分類法를 도입한데 이어, 1992년 12월 31일부터 원유, 항공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목재, 선철 등 長期的으로 수입수요가 많은 원자재 및 國內생산이 불가능한 첨단기술제품, 開途國의 저가제품, 中國이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54%에 달하는 3,371개 품목<sup>21)</sup>에 대해 平均 7.3%의 關稅率 引下措置를 단행한데 이어, '93년 12월 31일부터 2,898개 품목에 대한 關稅率을 平均 8.8%포인트 引下할 것을 決定함에 따라 '94년에는 單純平均關稅率이 39.9%에서 36.4%로 낮아지게 되었다.<sup>22)</sup> 그러나 對象品目 및 關稅引下幅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계속 수입되온 原資材 들과 외국으로부터 꼭 수입해야 하는 先進技術製品들을 爲主로 구성되어 있어 實質的으로 關稅引下에 따른 波及效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92년 4월 1일부터 1985년 이래 승용차 등 16개 品目에 대해

18) '92년 전체 수입량기준. GATT, SPEC(88)/ADD.4/REV.1, 4 may 1993, p.13.

19) 이상의 수입관세 이외에도 25개품목에 대해서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前揭書, p.13.

20)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編輯委員會,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1992/93. pp.156-165.

21) 對外經濟貿易部, 「國際貿易」 1993.1~3월호 부록참조

22) *China Daily*, 1993.11.16



20~80%의 追加關稅를 부과해왔던 輸入調節稅를 廢止함에 따라 16개 품目に 대한 實質의인 關稅는 28.6~61.5%까지 引下되었다. 그중 합성 섬유와 인조섬유직물 30%, 32 digit 이하의 소형 컴퓨터 45%, 컬러TV 수상기 42%, 중소기업 집적회로 50% 등으로 輕減되었다. 그러나 同時에 중국은 輸入調節稅를 징수했던 승용차와 일반 비디오카메라에 대해 關稅를 調整하여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 기존의 80%에서 100%로 上向 調整(실질관세부담은 37% 감소)하였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 80%의 수입조절세를 부과하던 것이 폐지됨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율은 종전의 120%에서 180%로(실질관세부담은 10% 감소),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의 관세율은 최고 220%(200~220%)로 調整하여 輸入調節稅의 폐지에 따른 輸入增大의 效果를 최소화 하였다<sup>23)</sup>.

그러나 中國政府는 1994년 1월1일부터 輸入自動車에 대해 關稅率을 70%로 대폭 引下키로 결정하였는데,<sup>24)</sup> 이와 같은 대폭적인 關稅引下에도 불구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同時에 시행된 換率單一化(본문참조)로 因해 元貨가 評價切下(5.7→8.7元)됨으로써 實質의인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中國은 關稅 이외에도 추가로 輸入調節稅(1992년 4월 1일 폐지)와 工商統一稅<sup>25)</sup>, 產品稅, 增值稅를 徵收함으로써 關稅와 똑같은 輸入抑制手

23) 沈樂平,張南鳴,「中國外務法律指引」,香港出版集團有限公司,1992.8, pp.183-184

24) China Daily Bussiness, 1994.1.2~8.

25) 공상통일세는 지금까지 외자기업에 부과해온 유통세성격의 세목이었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 제27조 및 〈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 제17조에 의하면 외자기업에 대한 同 稅制의 시행은 全人大 常務委員會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상통일세가 폐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고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표 II-5) 主要 品目別 關稅引下內容(1992년 12월 31일 이후)

가. 농산물: 평균인하폭 8.0%
1. 乳清(우유): 20→7% 2. 미연제 牛羊의 지방: 50→10%, 기연제 牛羊의 지방: 20→10% 3. 초코렛, 코코아를 포함치않은 糖食(사탕): 40→15% 4. 소가죽: 12→10%
나. 광산품: 평균인하폭 6.9%
1. 원유: 3→2% 2. 石腦油(나프타): 15→10% 3. 장섬유 石棉 20→15% 4. 보석: 9→7%
다. 화공품: 평균인하폭 4.2%
1. 에틸렌,프로필렌,부턴 등: 15→12% 2.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30→28% 3. 헥산락탐: 25→23% 4. 염료: 25→23% 5. 일차 성형 고무편(膠片):30→5%
라. 목재, 펄프: 평균인하폭 9.4%
1. 보통원목: 3→2.5% 2. 고급목재: 25→20% 3. 아교합판용 박판: 12→9% 4. 原紙: 30→25%
마. 섬유원료 및 직물: 평균인하폭 9.6%
1. 인조면, 아크릴사: 25→20% 2. 폴리아미드: 50→45% 3. 화학섬유직물: 100→95% 4. 의류: 100→95%
바. 건축자재: 평균인하폭: 9.2%
1. 보통석재 및 건축용 벽돌: 70→60% 2. 시멘트제품: 50→40%
사. 금속 및 금속제품: 평균인하폭 7.3%
1. 생철: 3→2% 2. 실리콘강철: 15→12% 3. 동: 6→5.5%
아. 기계전자제품: 평균인하폭: 6.2%
1. 가정용냉장고: 60→50% 2. 32비트이하 컴퓨터: 50→20% 3. 수동형 전동공구: 4. 컨텐서: 25→23% 5. 1차조립카메라: 50→5% 6. 일반카메라: 80→50% 7. 카메라조리개및 셔터: 80→25% 8. 복사기용 광도체 감광드럼: 50→20%
자. 교통 운송설비: 평균인하폭 5.2%
1. 대형비행기, 로켓 및 관련부품: 6→5% 2. 철도차량연결 진동감축기, 산열기: 80→50%

자료 : 「韓中經濟情報」, 駐中 한국대사관 93.1-2에서 재정리

〈표 II-6〉 주요 품목별 관세인하내용 (1993년 12월 31일 이후)

품 목		종 전(%)	조정치(%)
전자교환기 (5천회선 이하)		30	19
녹음테이프		100	50
PC		50	20
섬유 방직기계		20~25	10~13
수치제어 공작기계		15	9.7
포클레인 (1백톤 이상)		20	10
화장품		120	55
비누		100	50
컬러 TV	52cm이상	100	65
	42~52cm8	100	60
	42cm이하	100	50

자료 : 한국경제신문, 1993.11.16

段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는 產品稅 및 增值稅의 稅目중 消費品에 賦課되었던 一部稅目이 分離되어 消費稅로 轉換.新設<sup>26)</sup>됨으로써 일부 輸入品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消費稅 徵收가 決定되었다. 이에 따라 增值稅는 새롭게 調整·引上되었으며 產品稅는 廢止<sup>27)</sup>되었다.

以上の 稅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人民日報, 1993.12.1

27) 1993년 12월 13일 國務院令 第134號로 公布된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의 第29條에 따라 1984년에 公布·施行된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草案)」과 「中華人民共和國產品稅條例(草案)」을 폐지함으로써 產品稅는 廢止되었다.

## 1) 產品稅(輸入에 대한 產品稅의 경우)

產品稅(상품세)는 1984년 9월 18일 國務院이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產品稅條例(草案)」과 同年 9월 28일 財政部가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產品稅(草案)實施細則」에 근거하여 中國에서 生産, 購買, 輸入하는 상품에 대해 賦課해온 工商稅<sup>28)</sup>의 일종이다.

輸入商品에 대해 부과하는 產品稅는 中國內로 반입되는 產品稅 徵收對象 범주에 속하는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서 賦課해온 產品稅로서 그 稅目과 稅率은 國家稅務局이 海關總署와 함께 制定한 “海關稅則號列與 產品稅, 增值稅, 工商統一稅稅目對照表”에서 규정한 稅目과 稅率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특기할 만한 것은 稅率決定에 있어서 同種의 商品에 서로 다른 稅率이 존재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輸入담배의 경우, 質에 따라 最低 32%에서 最高 60%까지의 4가지 稅率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일괄적으로 60%의 稅率을 부과하여 왔다.<sup>29)</sup> 產品稅의 납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產品稅納稅額} &= \text{組成計稅價格(세액계산조성가격:과세표준)} \times \text{產品稅稅率} \\ &\{ \text{組成計稅價格} = (\text{C.I.F가격} + \text{關稅}) \div (1 - \text{產品稅稅率}) \} \end{aligned}$$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터 廢止됨에 따라 新設된 消費稅에 의해 產品稅 稅目중 消費品에 賦課되온 일부 產品稅는 消費稅 名目으로 徵收토록 되었다.

28) “工商稅는 1984년 10월 1일 관련법규의 발효로 產品稅, 增值稅, 營業稅의 세 가지 세목으로 분리되었는 바, 현재중국의 流通稅制는 內資企業에게 적용되는 山品稅, 증치세 영업세와 外資企業에게 적용되는 工商統一稅의 네가지 세목으로 구성된 二元化된 복합체제이다.” 자료: 趙顯垓, 「중국의 의자기업조세 제도」, 지역정보센터 93-04, 1993.9, p.121

29) 「中國財政, 稅收, 財務, 會計, 實用全書」, 經濟科學出版社, 1992. p.204

## 2) 消費稅(輸入에 대한 消費稅의 경우)

中國政府는 1993년 12월 31일 國務院令 135號로 “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를 制定(1994년 1월 1일 실시)하여 일부 消費品에 대해 國內生産, 委託加工 또는 輸入時 <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에 열거된 課稅對象 소비품의 稅率 또는 稅額에 따라 최저 3~45%의 消費稅率 또는 0.1원~240원의 消費稅額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비품에 대한 消費稅의 定率稅額算出法은 다음과 같다:

$$\text{消費稅納稅額} = \text{組成計稅價格(세액 계산 조성 가격: 과세 표준)} \times \text{消費稅稅率} \\ \{ \text{組成計稅價格} = (\text{關稅完稅價格}(= \text{C.I.F가 격})^{30}) + \text{關稅} \} \div (1 - \text{消費稅稅率})$$

## 3) 增值稅(輸入에 대한 增值稅의 경우)

增值稅(附加價值稅)는 中國에서 生産, 輸入하는 商品에 대해 부과되는 工商稅중 營業稅의 일종으로, 輸入商品에 대한 增值稅는 稅關을 통해 輸入되는 增值稅 징수 대상 범주에 속하는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지금까지 輸入商品에 대한 增值稅의 稅目과 稅率은 國家稅務局과 海關總署가 제정한 “海關進出口關稅與進口環節代征稅對照使用手冊”에 規定한 稅目과 稅率에 따라 실시되었으며<sup>30)</sup> 輸入商品에 대한 增值稅의 납세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 왔다.

30) 199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進出口 關稅條例> 제10조에 의하면 “세관이 심사·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到岸價格)가격을 관세完稅價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 중화인민공화국進出口關稅條例(1992.3.18 국무원제 96호 령), 제10조.

31) 前掲書, p.222. 「稅收理論與實務」, 山東人民出版社, 1989, p.268

〈표 II-7〉 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

稅 目	徵收範圍	計算單位	稅率(稅額)
1. 담배	각종수입담배포함		
(1) 갑류담배			45%
(2) 을류담배			40%
(3) 시거			40%
(4) 담배가루			30%
2. 酒類 및 酒精		톤 톤	
(1) 곡물로 빚은 白酒			25%
(2) 고구마로 빚은 백주			15%
(3) 黃酒			240원
(4) 맥주			220원
(5) 기타 酒			10%
(6) 酒精	5%		
3. 화장품	세트화장품포함		30%
4. 피부 및 모발 보호제품			17%
5. 고급장신구 및 보석, 옥	금, 은, 보석장신구 및 옥포함		10%
6. 폭죽, 불꽃			15%
7. 가솔린		리터	0.2원
8. 디젤		리터	0.1원
9. 자동차타이어			10%
10. 오토바이			10%
11. 소형자동차	22인승이하		
(1) 소형승용차			
- 실린더용량(배기량)			
2200cc이상			8%
1000-2200cc			5%
1000cc이하			3%
(2) 지프차			
- 실린더용량(배기량)			
2400cc이상			5%
2400cc이하			3%
(3) 소형버스(봉고)			
- 실린더용량(배기량)			
2000cc이상	5%		
2000cc이하	3%		

$$\text{增値稅納稅額} = \text{組成計稅價格(세액계산조성가격:과세표준)} \times \text{增値稅稅率}$$

$$\{\text{組成計稅價格} = (\text{C.I.F가격} + \text{관세}) \div (1 - \text{增値稅稅率})\}$$

그러나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134호로 공포(94년 1월1일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增値稅暫行條例” 제2조에 의하면 輸入과 관련한 增値稅의 세율은 예외적인 조항<sup>32)</sup>을 제외하고 17%로 조정하여 지금까지 8-15%<sup>33)</sup>였던 增値稅稅率이 2% 포인트에서 9% 포인트까지 상승되었다. 아울러 本規定 제15조에 따라 增値稅의 납세액산출방식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text{增値稅納稅額} = \text{組成計稅價格(세액계산조성가격:과세표준)} \times \text{增値稅稅率}$$

$$\{\text{組成計稅價格} = \text{關稅完稅價格}(= \text{C.I.F가격}) + \text{關稅} + \text{消費稅}\}^{34)}$$

32)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납세자가 판매 또는 수입하는 물품은 본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경우 세율은 17/100 이다.

제2항, 납세자가 다음의 물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 세율은 13/100 이다.

① 식량, 식용식물유 ② 수돗물, 증기, 냉기, 온수, 가스, 온수, 가스, 석유액 화가스, 천연가스, 매탄가스, 주민용석탄제품 ③ 도서, 신문, 잡지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구, 농업용비닐 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제품

제3항, 납세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율은 零이나,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항, 납세자가 가공.수리.정비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7/100 이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33) 「韓國日報」, 1994. 1.11

34) 1994년 1월 1일부터는 增値稅를 調整.상승하였으며 지금까지 시행되는 產品稅 및 增値稅의 稅目中 消費品에 賦課되었던 一部를 分離, 消費稅名目으로 轉換하여 소비세를 신설.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은 기존에 산품세와 증치세에서 부과하던 것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치세의 과표산출공식에 이처럼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증치세 세목에 소비세 세목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어 소비세로 전환된 증치세 세목을 소비세에서 별도 징수하는 것 외에도 증치세 과표에도 추가함으로써 특수소비품, 사치품,

## 4. 外換管理制度

### 가. 79-90년의 外換管理制度

中國은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79년 以前까지 실시한 엄격한 外換管理制度<sup>35)</sup>를 修正하여 國務院令으로 1979년 8월 13일에 “關於大力發展對外貿易增加外匯收入若干問題的規定”을 公布함으로써 貿易과 外換管理改革의 基本方向을 제시하였다.

貿易制度的 改革에 있어서는 輸出入商品의 分級管理和 各 地方政府的

---

비필수생활품 등을 爲主로한 소비세징수 대상품목에 대해 二重課稅를 하게 됨으로 실질적인 세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증치세 세목,세율표를 근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 35) 79년이전까지 채택해온 中國의 外換管理制度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新中國성립부터 私營工商業을 폐지하여 社會主義 경제체제로 개조·완성한 1956년까지로 新中國성립직후 華北, 華中, 華南, 華東의 4개 大行政區단위로 分散管理되었던 외환관리가 점차 中央政府로 이관되는 過渡期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外換管理의 核心은 중국에서 만연되었던 경제와 금융면에서의 特權을 排除하고 暗市場을 척결함으로써 國內의 금융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전국적으로 통일된 人民元의 換率決定體系와 外換管理制度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計劃經濟의 實行時期로 私營企業의 社會主義化가 완성된 1956년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시작된 1978년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 이전까지로 이 時期에는 對外貿易이 指令性計劃을 爲主로 하는 計劃管理體系와 國營貿易公司에 의한 獨占的인 指令性計劃管理가 실시되었다. 즉, 이 기간의 外換管理는 1954년 大行政區가 폐지되면서 종래의 大 행정구별 관리에서 中央의 통일관리로 전환되었고, 外換收支는 ‘收支의 統制’와 ‘收入에 따른 支出’이라는 두 가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관리되었다. 일부 외환관리를 완화하여 1957년 第8期 3中全會에서 상업과 재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양하고 1958년 부터 전국적으로 外貨留保制度를 실시(文化大革命기간중 취소)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고도의 中央執權的인 外換管理가 이루어졌다.

자료: 楊平燮,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서 93-02, 1993.7. pp.23-25



貿易公司 設立許可, 福建省과 廣東省에 대한 특수정책실시를 결정하였으며 外換管理制度에 있어서는 貿易 및 貿易外 外換에 대한 外換留保制度를 실시하고 아울러 貿易外換에 대해 1981년부터 內部決濟換率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內部決濟換率은 1980년 7월에 國務院이 國家進出口管理委員會가 제출한 “貿易外換의 內部決濟價格施行細則”을 비준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이를 근거로 中國政府는 1981년 1월 1일부터 貿易外去來에 대해서는 公定換率(官方牌價)을 적용하고 貿易去來에 대해서는 內部決濟換率(貿易內部結算價)을 적용하는 二重換率制度를 채택하였다.<sup>36)</sup> 아울러 1980년 12월 18일 國務院은 “外換管理暫行辦法”을 公布(1981년 3월 1일 시행)하여 外換을 「國家外匯管理局<sup>37)</sup>」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中國人民銀行을 外換業務取扱 專門銀行으로 지정, 中外機構와 個人의 外貨收入을 中國人民銀行에 매각토록 하는 동시에 本 銀行으로 하여금 모든 외화를 國家計劃에 따라 管理하도록 하였다. 또한 其他銀行에 대한 외환취급 허가권한을 中國人民銀行에 부여하여 1988년까지 총 90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이 中國人民銀行으로부터 외환업무 취급허가를 받았다.

中國의 外換留保制度는 1957년에 개최된 黨 8次 3中全會에서 상업과 재무관리권한을 地方政府와 鑛工業기업에게 委讓한다는 방침을 결정함과 동시에 1958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當時의 留保制度는 현행 留保制度와는 달리 地方에 留保된 외환은 모두 지방정부가 유보하고 企業은 外換留保의 權限을 갖지 못했으며 또한 유보된 외환을 지방정부가 자유로이 使用할 수 없고 中央政府로 부터 使用範圍와 用途 등에 대해 許可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外貨留保制度는 ‘文化大

36) 前掲書, p.144

37) 1979년 3월 국가외환관리총국이 설립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인 외환관리기구 가 종래의 중국인민은행에서 외환관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 12월 “外換管理暫定條例”가 공포됨으로써 외환관리의 법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자료: 前掲書, p.31

革命' 기간중에 取消되었다가 1979년 8월 13일에 발표한 “對外貿易의 發展과 外換收支의 增加問題에 關한 若干의 規定” 第9條에 外換收入의 增大를 위해, 貿易과 非貿易 外換에 대해 留保制度를 실시한다고 規定함으로써 中國의 外換管理는 종래의 中央政府가 直接管理하던 外貨割當制度和 地方政府등의 外貨留保制度가 共存하는 二重的인 外換管理制度가 형성되었다.

이 規定을 근거로 財政部, 國家外換管理總局, 進出口管理委員會가 공동으로 1979년 8월 “輸出商品外換留保施行規則”과 1980년 9월 “非貿易外換留保施行規則”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外換留保制度가 실시되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留保制度의 內容은 모든 企業과 個人이 獲得한 外貨는 公定換率로 中國銀行에 매각되며, 그 外貨는 中央政府의 外換留保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동일하나 外貨稼得者(지방정부, 정부부문, 기업)에 의해 獲得한 外貨중 一定比率를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이후 1980년 7월 國務院이 國家進出口管理委員會가 제출한 “貿易外換의 內部決濟價格 施行細則”을 비준함으로써 1981년 1월 1일부터 貿易外

〈표 II-8〉 公定換率과 內部決濟換率

(단위 : 元)

년 도	公定換率	內部決濟換率
1979	1.49	-
1980	1.53	-
1981	1.74	2.80
1982	1.92	2.80
1983	1.98	2.80
1984	2.79	2.80

자료 : Lok Sang Ho, “Wither China's Foreign Contrls”, edited by Josep Y.S. cheng, China: Modernization in the 1980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1989, p.470. 前掲書, p.145

〈표 II-9〉 外換管理制度 變遷過程

1979~1984년 상반기	<p>1. 외환관리기구 및 법규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 3월 국가외환관리총국이 설치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인 외환관리기구가 종래의 중국인민은행으로 전환.</li> <li>◎ 1980년 12월 “외환관리잠정조례”가 공포 됨으로써 외환관리의 법적적기초 마련.</li> </ul> <p>2. 외환유보제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는 종래의 통일적인 계획과 배분에 의한 외환관리제를 완화하여 1979년 8월 무역과 무역의 외환에 대해 유보제를 실시함으로써 외환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하는 外貨割當制度和 留保制度로 二元化.</li> </ul> <p>3. 내부결제환을 실시에 따른 二重換率制度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 7월 국무원이 “貿易外換의 內部決濟價格施行 에 關한 規則”을 승인하여 무역거래는 내부결제환율로, 무역외거래는 공정환율로 결제.</li> </ul> <p>4. 중국내에서 제한적인 외환거래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별기업의 외환수지 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1980년 10월 국가외환관리총국은 중국은행을 통해 시험적으로 외환 매매를 인정하였으며, 1981년에는 “外換額度 調節業務暫定方法”을 공포하여 중국은행을 통한 외환매매 제도화</li> </ul>
1984년 하반기~87년	<p>1. 地方 및 貿易企業의 외환유보비율 상향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5년 3월 “輸出外貨留保規定”을 발표 일반상품의 地方留保比率를 종래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지방:12.5%, 기업:12.5%)</li> </ul> <p>2. 外換調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환시장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5년 심천경제특구를 시발로 상하이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外換調節센터 설립</li> <li>◎ 1986년 2월 외환관리국이 “유보외환의 조절에 관한 12항 규정”을 발표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이 계획초과 수출로 획득한 外換額度를 외환관리국을 통해 국가가 정한 조절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계획초과 수출로 획득한 外換額度도 조절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人民元 금액을 지방정부의 수출보조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1986년 10월 국무원령으로 “外國人投資 獎勵에 關한 規定”을 발표하여 외자기업간 외환거래를 허용</li> </ul>

<표 계속>

<p>1984년 하반기~87년</p>	<p>3. 外換調節센터의 설립에 따른 실질적인 二重換率制度 형성                  ◎ 1985년 1월 1일부터 무역외환에 대해 적용된 내부결제환율은 폐지되었으나 외환조정센터 설립으로 공정환율과 조절환율이라는 두 가지환율이 공존하는 二重換率制度 再형성                  4. 中國銀行에 의해 獨占되온 外換業務 大幅擴大                  ◎ 1979년 10월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의 설립으로 취급기관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여, 1984년 10월에는 中國工商銀行 심천分行에 외환업무취급을 허용하였으며 1988년에 외환업무취급 전문은행의分行에 외환업무취급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地域性銀行(영업범위가 지역에 국한된 은행)에 대해서도 외환업무취급 허용                  ◎ 1982년 南洋商業銀行이 심천에 支店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후 1984년에 上海에 있던 4개 華僑 및 外資銀行支店이 외환업무를 취급하기 시작                  ◎ 1985년 '經濟特區의 外資銀行, 中外合資銀行管理條例'가 발표되어 외자은행 설립가속화</p>
<p>1988~90년</p>	<p>1. 外換去來의 活性化 및 去來方式의 多樣化                  ◎ 1988년 국무원이 발표한 "외환조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외환관리국이 전국의 省, 自治區 直轄市, 計劃單列市, 經濟特區 및 沿海開放都市에 外換調節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정부와 부문, 국유 및 집체기업과 외자기업간 외환거래 인정                  ◎ 1988년 9월 上海 外換調節센터가 會員制와 공개경매방식을 채택하면서 外換調節公開市場<sup>38)</sup> 설립                  2. 外換留保方式 轉換                  ◎ 貿易企業에 대해 經營請負責任制를 실시함과 同時에 計劃을 超過한 수출에 대해서는 지방의 留保比率를 優待하는 정책 실시<sup>39)</sup>                  ◎ 1988년 5월 "海南省投資開發 獎勵에 關한 規定"을 발표 海南省내 기업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 수입에 대해 外貨現金을 留保할 수 있도록 인정</p>

자료 : 楊平燮,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서 93-0 2, 1993에서 재정리

38) 1988년 9월 上海외환조정센터가 선진국의 외환시장(외환거래소)을 모델로 하여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접목시킨 외환조정공개시장을 개설하고 會員制方式에 의한 거래를 도입한 이래, 北京의 외환조정공개시장, 廈門(1989년 9월), 福建省 福州(1990년 3월), 海南省 海口(1991년 4월), 浙江省 杭州(1991년 5월), 遼寧省 大連(1991년 6월), 심천, 青島, 合肥派, 重慶, 江蘇省(1992년 6월), 河北省 石家莊(1993.4)등의 지역에 外換調節公開市場이 운영되고 있음.

자료 : 「金融時報」, 1992.10.22. 前掲書 p116.

39) 예컨대 30%의 유보율이 적용되고 있던 일반상품의 경우 계획이상을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70%의 지방유보가 인정 되도록 하였음.

자료 : 전게서, p101.

去來에 대해서는 公定換率을, 貿易去來에 대해서는 內部決濟換率을 적용하는 二重換率制度가 실시되어 1981년 1월부터 1984년 말까지 무역거래에 대해서 1달러당 2.80원의 內部決濟換率이, 貿易外 外換決濟에 대해서는 公定換率이 적용되었다.

1979년부터 '90년까지의 외환관리제도의 주요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보면 <표 II -9>와 같다.

#### 나. 91年以後의 外換管理制度

貿易管理制度의 變化<sup>40)</sup>에 따라 외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外換管理方式도 점차 企業의 經營條件, 특히 수출여건을 改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91년 이후 中國의 外換管理制度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첫째, 1991년 1월 1일부터 무역기업간 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經濟特區와 一部沿海地域에 대해 우대하던 留保比率을 廢止<sup>41)</sup>하고

40) 中國의 대외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1991년 대외경제무역부는 보다 진보된 개혁을 위해 5개 조치를 발표하였다.

5개 조치: ① 留保制度: 종래의 지역별 차별제도를 폐지하고 商品別로 통일된 유보제를 실시한다. ② 각 省.自治區.直轄市 및 計劃單列市의 政府, 각종 專業輸出入公司, 工業貿易專業輸出入公司 및 기타 對外貿易企業은 국가로부터 매년 수출액,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액, 외환상납액을 할당받는다. ③ 무역기업의 整理整頓을 실시하되, 수출능력을 갖춘 大.中型 生產企業과 生產企業集團에게는 자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각 전업수출입공사와 각 수출입상회가 무역상품에 대한 협조관리를 실시한다. ④ 외환조절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에 상납한 나머지 외환은 모두 조절센터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 지방정부와 부문이 행정수단으로 유통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외자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 자료: 「中國通信」, 1991.1.24.

41) 西藏티벳자치구를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지역별로 차등화 되었던 中央上納 및 地方의 留保比率을 廢止하였다. 즉, 티벳자치구의 경우 종래와 같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은 100% 地方政府가 留保하며, 기타 소수민족 자치구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

상품별유보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輸出補助金の 撤廢와 獨立採算制의 實施에 따른 貿易企業의 經營赤字를 줄이기위해 一般商品의 地方과 貿易企業에 대한 留保比率를 종래의 30%에서 50%로 대폭 上향조정하였다.

〈표 II-10〉 商品別 中央上納<sup>42)</sup> 및 留保比率(貿易外換의 경우)

分 類	中央上納比率	地方의 留保比率		
		地方政府	輸出企業	生産企業
一般商品	50% * 그중 有償:30% (수출기업: 20% 생산기업: 10%)	10%	40%	
石油 및 石油製品				
* 國家統一分配하는 石油	96%	2.7%	1.3%	
* 石油의 超過生産分 輸出	有償 30%	委託單位	70%	
* 石油代替 石炭 輸出	50%	委託單位	50%	
機械·電氣·特定 技術製品	有償: 30% (수출기업: 20%, 생산기업: 10%)	5%	65%	
委託加工(賃加工費)	10%	10%	45%	35%
軍物品	100% 留保(軍需品取扱企業에 留保)			
티벳自治區	100% 留保			
少數民族自治區	국가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補助.			

資料 : ‘上納中央外匯額度管理辦法’제3조 및 ‘辦理上納中央外匯和核撥留成外匯額度的 暫行規定’ 제1항을 기초로 작성. 前揭書, p.104

제특구지역 등에 주어졌던 優待政策을 廢止하였다.

42) 중국정부는 “上納中央外匯額度管理辦法”(1991.1.26 국무원 승인) 및 “辦理上納中央匯和海核撥留成外匯額度的 暫行規程”(1991.3.13 국무원 승인)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 有償上納을 도입하였다. 有償上納이란 외환조절센터의 市場換率로 상납하는 것을 말하며, 無償上納은 公定換率로 상납하는 것을 말한다. 楊平變,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서 93-02, 1993.7 p103.

둘째, 民間이 保有하고있는 外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國內 居住者의 外貨 및 個人 出國에 필요한 外換調節에 關한 暫定規定”을 公布함으로써 外換調節의 參加對象을 個人에게까지 擴大하였으며, 調節換率의 單一化를 목적으로 1992년 北京에 國家級 “全國外換調節센터”를 開設運營하였다. 1993년 4월 15일에는 外換管理局이 ‘外換調節市場 管理規定’을 발표하여 外換調節市場에 對한 管理를 처음으로 法制化함으로써 地方政府가 行政的인 手段을 이용한 외환시장의 유통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셋째, 1991년 이후 輸出補助金, 輸出入許可, 輸出入檢査制度 등 行政的인 規制에 의존하던 貿易管理方式이 美國과의 通商摩擦과 GATT加入을 앞두고 점차 換率과 關稅 등 經濟的인 手段에 의한 管理로 변화함에 따라 1991년 4월 19일 공식적인 발표없이 管理變動換率制度를 導入<sup>43)</sup>하였다. 이후 中國의 公式換率은 대체로 平價切下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 왔다.

#### 1) 輸入관련 外換管理制度의 問題點

中國의 外換管理制度는 輸入을 抑制하고 輸出을 促進한다는 原則下에서 推進되었기 때문에 輸入을 規制하는 要素를 상당부분 內包하고 있다. 즉, 外換使用許可制度, 二重換率制度, 계속적인 評價切下 등은 外換管理를 통한 주요한 輸入規制 手段이 되고 있으며, 外資企業에게 適用되고 있는 外換收支 均衡義務와 輸出義務比率는 中國의 內需市場 침투

43) 前掲書, p.36. 國際商報, 「我國進口體制改革方向和原則」, 1992.4.25.

“管理變動換率制度”는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목표환율을 설정하고 市場均衡換率이 이와 乖離될 때 外換市場에 개입하여 換率의 漸進的인 變動을 誘導하는 制度로 때로는 自國의 輸出을 增大시키고 輸入을 減少시키기 위하여 換率水準을 意圖的으로 市場의 均衡換率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自國通貨의 價値를 評價切下시키는 一名 不純한 換率變動(Dirty Floating Exchange Rate)을 取하기도 한다.

〈표 II-11〉 中國의 換率과 輸出入 推移

(단위 : 元, 億 달러)

	市場換率		公定換率	輸出入		
	美 달러	外換額度		輸出	輸入	貿易收支
'91. 1	5.68	0.46	5.2221	39.78	30.71	9.07
2	5.70	0.48	5.2221	40.62	31.23	9.38
3	5.72	0.50	5.2221	53.53	49.42	4.11
4	5.81	0.52	5.2659	52.82	52.04	0.78
5	5.86	0.52	5.3139	58.66	53.49	6.17
6	5.88	0.52	5.3535	59.21	52.00	7.21
7	5.85	0.50	5.3555	63.80	52.83	10.98
8	5.86	0.50	5.3593	64.77	56.01	8.76
9	5.88	0.50	5.3735	62.27	55.88	6.40
10	5.88	0.50	5.3790	62.40	52.88	9.52
11	5.88	0.49	5.3858	66.22	57.72	8.50
12	5.91	0.48	5.4131	95.60	94.78	0.82
'92. 1	5.92	0.46	5.4481	39.99	30.17	9.66
2	5.93	0.46	5.4635	49.70	48.51	1.19
3	5.94	0.47	5.4734	59.97	58.93	1.04
4	6.06	0.55	5.4965	63.62	60.87	2.75
5	6.18	0.69	5.5036	66.27	63.66	2.61
6	6.34	0.88	5.4751	76.58	68.30	8.28
7	6.64	1.22	5.4432	71.60	62.74	8.86
8	7.05	1.64	5.4287	76.50	63.70	12.80
9	6.93	1.43	5.4948	70.64	68.42	2.21
10	6.93	1.38	5.5369	76.86	71.15	5.17
11	7.16	1.44	5.6131	85.27	76.36	8.91
12	7.29	1.54	5.7982	113.23	133.43	20.20
'93. 1	7.77	1.99	5.7640	33.58	32.05	1.52
2	8.34	2.60	5.7699	58.20	64.70	-6.50

註 : 公定換率은 月平均 中心換率임.

資料 : 「中國海關統計」, 제4기, 1992.제4 China Monthly Statistic, 1992.1~1993.5

를 制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外換使用許可制度(額度管理制度)를 통한 輸入規制 이다. 中國의 모든 輸入製品에 대해서는 輸入契約을 체결한 후에 外換管理局으로부터 外換使用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사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中國의 外換保有高가 급격히 減少하거나, 輸入이 급격히 增加는 경



우에는 外換使用許可를 遲延하거나 禁止함으로써 輸入을 억제하고 있다.

둘째, 二重換率制度를 이용하여 輸入을 規制하고 있다. 특히 外換市場의 需要가 폭발적으로 增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輸出企業에게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므로 간접적인 輸出補助金의 역할을 하게되지만, 수입기업에게는 元貨로 표시한 수입단가가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調節換率이 急騰하는 경우, 國家의 輸入計劃에 포함된 輸入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가의 수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소비재, 전기 및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등의 수입은 강력하게 抑制된다.

셋째, 中國이 外貨留保制度를 실시함으로써 輸出企業의 경우 수출을 통해 획득한 外換의 일부를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게 되었으나, 수출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外換을 使用할 수 있는 源泉이 극히 制限되고 있다. 즉, 이러한 輸入企業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公定換率보다 높은 調節換率로 외환을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換差損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外換留保制度는 輸出을 促進하는 효과외에도 輸入을 規制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째, 中國政府의 지속적인 評價切下에 따른 輸入抑制 效果이다. 中國政府는 1980년대 중반이후 대대적인 評價切下를 단행하였고, 1991년 4월 이후에는 소폭적인 평가절하를 계속 단행하였다.<sup>44)</sup> 이러한 人民元 換

44) 公定換率이 内部決濟換率과 같아지면서 中國政府는 1985년 1월 1일 내부결제 환율을 폐지하고, 換率을 2.80元으로 單一化 하였다. 이후 1991년 4월 管理變動換率制度가 채택될때까지 人民元의 換率은 4차례에 걸쳐 大幅的인 評價切下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기간(1985~91년 4월)은 1985년 브뤼셀合意 이후 국제시장에서 달러화의 弱勢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人民元의 評價切上이 요구되었으나, 逆으로 中國은 人民元의 환율을 評價切下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브뤼셀합의 직후인 1985년 10월에는 1달러당 2.9681元에서 3.20元으로 7.81% 評價切下되는데 이어, 1986년 7월에는 3.7221元으로 15.8% 評價切下되어 1989년 12월 4.7221元으로 21.2% 評價切下될 때까지 固定되었다. 그리고 1991년부터

率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輸出을 促進하고 輸入을 抑制함으로써 貿易收支를 改善시키는 效果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外資企業에게 부여되고 있는 外換收支 均衡義務와 輸出義務比率은 중국에 投資한 企業들의 중국 內需市場 進出을 制限하는 중요한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外資企業은 경영 및 해외송금에 필요한 외환을 外換調節市場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調節換率이 暴騰하면서 큰 換損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二重換率制度, 계속적인 評價切下로 특징지워지는 中國의 外換管理制度가 중국시장의 接近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어 1990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外換管理制度에 대한 改革要求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더욱이 중국은 GATT에의 再가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환 관리제도의 개혁은 不可避한 立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單一變動換率制를 실시키로 決定하고 二重換率制度 및 留保制度 등을 폐지하였다.

## 2) 單一變動換率制 導入(1994.1.1)

中國人民銀行은 1993년 12월 29일 換率單一化를 단행키로 결정<sup>45)</sup>함에 따라 '94년 1월 1일부터 二重換率制度를 廢止하고 單一變動換率制를 도입하여 1월1일에는 美 달러당 인민폐의 변동환율이 8.7元으로 첫 公示되었다.<sup>46)</sup> 중국인민은행이 12월 28일에 발표한 “關於進一步改革外匯管理體制的公告”에 의하면 換率單一化에 따른 主要變化는 다음과 같다.

---

輸出補助金を 廢止하고 貿易企業의 損益自己負擔과 經營請負責任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貿易管理制度 改革에 앞서 1990년 11월에는 다시 5.221元으로 9.57% 評價切下되었다. 자료: 楊平變,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지역정보센터, 1993.7, p.146.

45) 「人民日報」, 1993.12.30.

46) 기존의 公定換率이 약 5.8元이었으므로 이번조치로 實質價值는 약 33.3% 評價切下되었음.

첫째, 市場需給에 基礎한 單一變動換率制의 실시이다. 이에 따라 通貨當局이 결정하는 公式換率과 외환조절센터의 市場換率로 二元化 되어있던 기존의 제도는 市場換率로 一元化 되었으며<sup>47)</sup> 同 措置로 향후 RMB의 兌換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전국통일의 은행간 外貨交易市場(外匯交易市場)의 開設이다. 中國政府는 새로운 換率管理體制의 가동을 위해 '94년 1월 1일부터 北京, 天津, 杭州, 심천, 廈門, 成都 등 6개도시의 外환시세를 위성통신망을 통해 上海에 위치한 “全國外貨交易中心:National Foreign Exchange centre” 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sup>48)</sup>

셋째, 留保制 및 上納, 外換使用管理制度(額度管理制度)의 廢止이다. 즉,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획득한 外화중 一定比率를 중앙에 上納·留保하던 上納制와 留保制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輸入時 外환관리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던 外換使用許可도 철폐되어 一般貿易用 外貨의 경우 輸入契約書 및 外國金融機構의 지불요구통지만 있으면 지정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쿼터품목이나 許可證品目を 수입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契約書와 證憑書類만 구비하면 外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9)</sup>

그러나 새 制度가 定着될 때까지 輸出企業의 外貨使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輸出外貨 決濟額중 50%를 지정은행에 예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輸入時 필요한 外貨를 同 口座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47) 그러나 인민은행은 국가가 시장개입, 통화정책, 금리 등을 통해 환율안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중국정부의 환율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48) 향후 본 교역센터는 모든 외환조절센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거래·결정된 전날의 외환시세를 기초로 은행에서 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상의 문제로 은행에서의 거래는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이기 때문에 외환조절센터의 운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4.1.2.

49) 무역협회, 「日刊貿易」, 1994.1.6

한 외화자금이 預置殘額을 超過할 경우에는 銀行에서 買入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기존 留保殘額은 消盡될 때까지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 5. 商品檢査制度

중국은 “進出口商品檢驗法”(1989.2.21 공포 : 동시에 1984년 1월 28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進出上品檢驗條例 폐지) 및 同 “實施條例”(1992.10.7 國務院 批准, 10.23 國家商檢局 公布)에 근거하여, 國家商檢局(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의 주관으로 輸出入商品檢査를 실시하고 있다. 中國의 輸入檢査制度는 수입품에 대해 국산품보다 더 높은 품질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검사제도 자체가 國內産業의 保護와 불요불급한 품목의 輸入을 制限하기 위한 手段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에 근거하여 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이 制定·公布한 〈商檢機構實施檢驗的進出口商品種類表〉<sup>50)</sup>(略稱 種類表)에 따라 17類 303個 品目の 輸入商品과 17類 589個 品目の 輸出商品에 대해 商品檢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商品檢査 對象品目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0) 1989년 7월 27일 공포, 同年 8월 1일부터 실시된 본 종류표는 當時에 輸入商品 40류 148개(중전 20류 68개 품목)품목과 輸出商品 64류 333개 품목(중전 42류 307개 품목)을 검사 대상품목으로 분류하였으나, 商品分類의 科學化와 標準化에 따라 1990년 12월 1일 HS分類法에 의한 새로운 “種類表”를 국가상협국이 공포하여 輸入商品 17류 303개 품목과 輸出商品 17류 589개 품목에 대한 검사 대상품목을 확정, 1991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상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1990년 12월 1일 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第4號令

〈표 II-12〉 輸出入商品 檢査對象品目 變化推移

89년 이전	89~90년	91년 1월 1일~
수입: 20류 68개	수입: 40류 148개	수입: 17류 303개
수출: 42류 307개	수출: 64류 333개	수출: 17류 589개

자료 : IPECK, 「北方經濟」, 1991.6

「商檢機構實施檢査的進出口商品種類表:1990.12.1」, 國家商檢局 第4號令

### 가.法規上的 輸入檢査條項

1992년 12월 23일 “中華人民共和國輸出入商品檢査法”을 근거로 制定된 “中華人民共和國輸出入檢査實施條例” 제2장 13~23조에는 輸入商品에 대한 檢査規定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13조: 法定檢査對象 수입상품이 도착했을 경우, 화물수취인은 荷役港이나 到着驛의 商品檢査機構에 신고해야 한다. 商檢機構는 세관신고서에 “已接受登記”라는 도장을 捺印하며, 세관은 本 書類를 근거로 날인후 通關킨다.

제14조: L/C 또는 B/L에 수입상품의 檢査지점을 約定한 경우에는 約定한 지점에서 檢査를 실시한다. 檢査地點이 約定되지 않은 경우에는 荷役港이나 到着驛 또는 商檢機構가 指定한 地點에서 商品檢査를 실시한다. 大量의 벌크화물, 腐敗하기쉬운 화물, 하역시 잔손이나 수량·중량의 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하역항이나 도착항에서 반드시 商品檢査를 실시한다. 다른것과 결합후에야 檢査를 할 수 있는 세트설비, 전자·기계제품 및 도착항에서 檢査후 재포장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소재지에서 檢査를 실시한다.

제15조: 法定檢査對象 수입상품은 등기후, 수취인은 반드시 規定된 檢査지점에 期限內에 계약서, 송장, Packinglist, B/L을 지참하여 商檢기구에 商品 檢査申請을 한후 商檢기구의 檢査를 받아야한다. 商品檢査를 받지않은 상품은 販賣와 使用을 禁止한다.

법정검사대상 이외의 상품을 계약서에 상품검사를 받도록 約定한 경우에는 前條에 근거하여 상품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상검기구는 이미 상품검사를 신청한 수입상품에 대해 클레임 提起期限內에 검사를 종결해야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 檢査結果通知書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계약서에 상검기구가 검사 결과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면 檢査證을 발급한다.

제17조: 輸入商品이 검사결과 法律·行政法規에 규정된 표준 또는 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檢査標準에 부적합한 경우, 반드시 상검기구의 監督下에 再檢査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비로서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재검사를 할 수 없거나 재검사후에 여전히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상검기구는 수취인에게 화물을 返送시키거나 廢棄處分 하도록 命命한다.

제18조: 상검기구는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세트설비 및 그 재료에 대해서는 “不准安裝使用通知書”를 발급한다. 기술적인 처리를 거친후 재검사에 합격하면 다른것과 결합(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수입자동차가 도착한후에 수취인은 상검기구에서 발행한 수입자동차 검사통지서를 근거로 자동차 관리기관에서 차량번호를 취득하고 품질보증기간 만료 30일전에 품질상태를 상검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법정검사대상 이외의 수입상품을 계약서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취인은 계약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한다. 상검기구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檢査를 받도록 督促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상품에 대해 無作爲 抽出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검수결과 不合格으로 判定되어 상검기구의 檢査證을 근거로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受取人은 즉시 所在地 商檢機構에 검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1조: 상검기구의 상품검사 또는 무작위 추출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이미 외국측에 클레임을 제기한 수입상품에 대해 교환 또는 반송이 필요치 않은 경우, 수취인은 일정량의 실물 또는 샘플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측에 교환 또는 반송을 제기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관해

야 하며,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수입상품이 하역항에서 잔손 또는 數量·重量의 不足이 발견되어 클레임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취인은 즉시 상검기구에 검사증을 신청해야한다.

하역회사는 잔손부분에 대해 분리·보관해야한다.

제23조: 國家經濟, 民生, 高價, 복잡한 技術 등과 관련된 중요한 수입상품 및 대형 세트설비에 대해 수취인은 반드시 契約書에 輸出國에서 船積前에 豫備檢査, 生産檢査, 包裝檢査 및 화물도착후 최종검사와 클레임조항을 約定해야 하며, 계약약정에 따라 선적전에 예비검사와 생산검사, 포장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 생산검사, 포장검사에 대해 수취인의 주관 부문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상검기구는 檢査人員의 判見이 필요할 경우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선적전 예비검사, 생산검사, 포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以上の 商品檢査規定외에도 國家商檢局, 國家經濟委員會, 對外經濟貿易部, 海關總署가 공동으로 제정한 “進口商品質量監督管理辦法”<sup>51)</sup>의 규정에 따라 安全·衛生 등에 관계되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實施質量許可制度的進口商品目錄”<sup>52)</sup>을 제정하여 輸入商品品質許可制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實施質量許可制度的進口商品目錄”에 包含되는 商品을 중

51) 1988년 6월 9일 國家進出口商品檢査局 公布. 1990년 5월 이래 중국은 자동차, 오토바이엔진, 냉장고, 냉장고압축기, 에어컨, 에어컨압축기, TV수상기, TV브라운관등 9개 기계·전자제품에 대해 수입상품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2) 본 目錄은 國家商檢局과 相關 檢査機構의 主管부문이 제정하며, 실시되기 6개월 전에 公告된다.

국에 販賣하기 위해서는 〈安全標志: 안전필증〉를 획득해야 만 하는데 “進口商品質量監督管理辦法” 제2장 7~12조에 그 節次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대외무역기업은 “實施質量許可制度的進口商品目錄(이하 目錄)”에 포함된 상품을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외국 메이커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安全標志〉, 證書, 登錄을 신청·수취하도록 한후에야 비로서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目錄〉이 공포된후, 외국 메이커가 〈목록〉내 상품을 아국에 처음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의 품질규격에 따라, 계약전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아국의 국가상검국이 지정한 상검기구나 관련 감독·검사기구의 주관 부문이 지정한 감독·검사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 검사비용과 생산조건 검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제9조: 상검기구와 관련 감독·검사기구는 신청한 샘플과 관련 기술서류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安全”法規와 標準에 따라 상품검사와 심사를 책임진다.

검사를 통해 1차 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商檢機構 또는 관련 監督·檢查機構는 즉시 신청인에게 通知하여 生産工場의 生産條件에 대한 審査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검사내용과 시간을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생산메이커의 生産條件이 審査에 합격한후, 國家商檢機構 또는 관련 감독·검사기구의 주관부문이 신청인에게 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동시에 〈安全標志〉의 사용을 비준하고 등록을 허용한다.

제11조: 신청한 샘플이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생산공장의 생산조건이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申請人은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 輸入商品의 〈安全標志〉사용과 證書 또는 登錄의 有效期間은 國家商檢局과 관련 監督·檢查機構의 주관부문이 商品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再신청해야 한다.



#### 다. 商品檢査機構

현재 輸出入商品에 대한 檢査는 輸出入관련 정책입안기구인 SACI(中國進出口商品檢査局)의 지도하에 CCIB, CCIC에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檢査를 담당하고 있으며 CACI에서는 輸出入商品檢査에 대한 諮問 및 技術的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53)</sup>

##### 1) CCIB(People's Republic of China xx(地名)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Bureau)

CCIB는 SACI가 “國家進出口商檢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앞에 國家대신 “北京進出口商檢局” 또는 “山東進出口商檢局”과 같은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CCIB는 綜合的인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SACI와는 달리 SACI와 연계하여 수출입상품검사에 대한 정책입안에 참여할 뿐만아니라 전국(특히 주요항구)에서 상품검사신청접수, 창고와 항구에서의 검사, 실험실에서 분석 등 실질적인 상품검사를 실시하여 商品檢査證을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CCIB는 安全이나 衛生이 확인되었거나 국가(또는 지방정부)의 商品品質에 關한 證明을 획득한 輸出商品에 대해 安全, 衛生, 品質에 관한 CIB마크의 검사필증사용을 신청해오면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

53) SACI(國家進出口商品檢査局: the State Administration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수출입관련 정책입안기구로서 수출입상으로 부터 직접 수출입상품검사의 신청을 받는 실무기구는 아니며 중국정부를 대신해서 외국의 정부나 공장, 비즈니스맨들과의 회담 또는 계약을 담당하고있다. SACI는 현재 스위스의 SGS, 미국의 UL, 일본의 NKKK 및 OMIC 등과 같은 우수한 상품검사기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and Saci, Ccib, Ccic, Caci”, International Business Monthly No.73,1993.9.

그리고 品質許可制度의 適用을 받는 “實施質量許可制度的進口商品目錄”에 포함된 輸入商品에 대해서는 반드시 CIB마크의 안전필증(상품검사필증)을 획득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들 상품에 대해 CCIB에서 검사후 안전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實施質量許可制度的進口商品目錄”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기타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신청해올 경우, 품질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CIB필증은 다음과 같이 발급된다.

- ① 安全필증: 관련국가 또는 국제 안전기준과 범규에 부합되는 수출 상품과 품질 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입상품에 대해 발급된다.
- ② 衛生필증: 국제음식물 안전규정이나 공중위생 기준에 부합되는 수출상품에 대해 발급된다.
- ③ 品質필증: 우수상품에 대한 국가의 기준에 부합되거나 선진국의 기준에 부합되는 수출상품에 대해 발급하며, 품질허가제도의 적용을 받지않으나 수입계약의 규정에 부합되거나 외국제조업체의 품질기준에 부

〈圖 1〉 상품검사필증의 종류



합되는 수입상품에 대해 발급된다.

2) CCIC(中國進出口商品檢驗總公司: China Import and Export Commodity)

CCIC는 CCIB와 마찬가지로 SACI의 지도를 받는 상품검사기구이나 성격은 CCIB와 달리 순수한 獨立事業體로서 CCIB를 도와 國內外 輸出入商品에 대한 檢查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CCIB의 보조기구이며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ACI에서 발행하는 〈商檢機構實施檢驗的進出口商品種類表〉내의 輸出入商品에 대한 檢查와 輸出入 與否의 決定權은 여전히 SACI와 CCIB에 있다.

3) CACI(China Assosiation of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CACI는 SACI와 CCIB의 지도하에 있는 상검관련 기구로 貿易公司와 商品檢查機構, 商品檢查機構와 科學技術機構, 輸入業體와 輸出業體 등을 연계시켜주고 諮問 및 技術指導, 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部門間, 公私間, 私營企業間의 關係調整 및 情報提供, 雜誌發刊 등을 하고 있다.

### Ⅲ.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 1. 市場開放化 作業의 背景

中國의 傳統的인 대외무역체제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的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기초해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 改革·開放이 심화 되면서 수출촉진을 위해 각 지방의 貿易權限과 外貿公司의 自律權이 대폭 확대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변화로 中國의 輸出入規模는 78년부터 92년까지 年평균 16%씩 增加하여 國際經濟에서 차지하는 中國經濟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國際經濟秩序의 再編과 中國의 지속적인 貿易黑字, 특히 對美貿易의 대폭적인 무역흑자는 美國과의 通商摩擦을 야기하여 중국은 1992년 10월 10일 미국과 市場開放에 대한 諒解覺書에 서명함으로써 輸入管理制度의 改善을 포함한 市場開放에 대한 대폭적인 讓步를 단행하였다. 중국이 이와 같이 시장개방에 합의한 데에는 지난 1986년 이후 GATT 재가입을 추진중에 있어, GAT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합의한 市場開放의 約束 이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보다 過重한 入場料(entrance-fee)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중국이 GATT에 加入하려는 데에는 政治的으로는 지난 71년 UN 復歸에 이은 國際的인 地位向上과 經濟的으로는 世界11位の 交易國으로서 전체교역량의 85%이상이 GATT체약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交易相對國임에도 불구하고 GATT 未加入國으로서 差別的인 待遇를 받고있어 이에 대한 해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經濟的 實益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GSP의 향유이다. 현재 중국은 12개 EC 會員國을 포함한 21개

국으로 부터 GSP의 惠澤을 받고 있으나 세계 최대의 시장인 美國으로 부터는 GSP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GATT 加入으로 美國으로 부터 GSP의 惠택을 받을 경우 中國의 輸出競爭力은 매우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開途國 待遇이다. 中國은 현재 가트加入의 前提條件으로 同國에 대한 開途國 地位를 요구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가 認定될 경우, 輸出商品에 대한 一定水準의 補助와 국내 幼稚産業의 保護, 國際收支 條項의 利用 등이 가능하게 되어 수입억제를 위한 숨은 非關稅 障壁으로서의 활용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中·美貿易紛糾의 해결이다. 가트의 多者間 協商原則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는 중·미간 무역분규를 國際化 시킴으로써 美國의 一方的인 判決을 拒否하고 國際舞臺에서의 解決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國際的 發言權強化이다. 세계 3대 경제무역 조직인 세계은행, IMF, GATT 중 가트를 제외한 2개 組織에 이미 加入한 상태에 있는 中國이 GATT에 가입할 경우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中華經濟權의 形成으로 명실상부 국제적 지위는 물론 發言權이 強化 될 것이다.

다섯째, 企業經營의 國際化이다. 국제시장의 수요와 가격에 따른 생산 체제로 전환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상품과 기술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經營效率과 技術開發에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政治·經濟的 實益으로 因해 中國은 현재 GATT 加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GATT창설 당시 原 GATT체약국 이었기 때문에 中國의 GATT(재)加入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內包되어 있다.

中國과 GATT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國은 1948년 GATT창설 당시 國民黨 政權의 中華民國의 자격으로 締約 當事者가 되었으나, 1949년 共產黨 政權의 中華人民共和國이 들어섬에 따라, 1950년 체약 당사자였던 국민당의 現 臺灣政府가 一方的으

로 GATT 脱退(대만은 1965년 GATT가입을 재신청하여 “옵저버”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1971년에 GATT로부터 同 자격을 상실함)를 宣言함으로써 중국도 GATT 締約國으로서의 자격을 喪失하게 되어 中國은 GATT 會員國들과의 正式關係는 중단되어 왔다. 그러나 1971년 UN이 중국의 合法的인 地位를 認定함에 따라 중국은 UNCTAD(UN무역개발회의)와 GATT의 공동 산하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의 構成員資格을 획득 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던 GATT와의 단절을 終熄하게 되었다. 그후 1982년에 GATT 제38차 締約國 會議에 “옵저버”의 身分으로 처음 참석하여 中國의 原 GATT 締約國으로서의 지위회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GATT 再加入에 대한 3가지 原則, 즉

- ① 新規加入方式<sup>54)</sup>이 아닌 原 締約國으로서의 地位恢復의 방식.
- ② 具體的인 輸入義務賦課가 아닌 關稅讓許方式.<sup>55)</sup>

---

54) GATT 33조에는 신규가입에 대해 “加入希望國政府和 締約國團의 합의에 따라 이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합의는 가입협상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이 협상의 결과는 의정서(protocol)로 정리 된다. 즉, 의정서는 신규가입의 가입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대개의 경우 여기에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가 첨가된다. 그러므로 가입조건은 관세양허뿐만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까지 포함하며, 때로는 가입국의 외환 무역제도나 정책의 변경까지도 포함된다. 가입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개도국에게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non-reciprocity). 예컨대 관세인하폭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 받는다.

의정서가 채택되면 신규가입국의 가입여부는 전회원국 2/3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면 대부분 GATT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의정서의 작성과 채택이 신규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자료: 金基洪/趙顯泰, 「中國의 GATT加入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3.4, pp.8-9.

55) 일반적으로 신규가입국은 대개의 경우 관세인하와 무역제도에 대한 약간의 약속을 하는 형태로 입장료(entrance fee)를 지불해야 왔다. 그러나 CPE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입장료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CPE국가들의 경제운용원칙이 시장경제권과 일치하지 않아 市場經濟國을 대상으로 한 GATT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

③ 開發途上國으로서의 待遇 및 中國經濟(무역)實情에 相應하는 義務 賦課方式 등을 皮력하였다.

그후 1983년 12월 15일 중국은 MFA(다자간섬유협정)에 加入함으로써 GATT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7월 10일에는 중국대표가 GATT 事務局長에게 原 GATT 締約國으로서의 地位恢復에 대한 申請書를 제출하였으며, 1987년 2월에는 GATT가입의 慣例와 節次에 따라 GATT에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備忘錄을 제출함으로써 同年 3월에 GATT 理事國은 ① 中國의 貿易制度審議 ② 加入에 대한 義務와 權利에 關한 協定書 草案作成 ③ 關稅讓許表 作成을 위한 作業班設置 ④ 中國과 GATT에 關聯된 기타문제에 대한 討議 ⑤ GATT加入 決定 節次問題 및 理事會에 建議事項 提出 등을 위한 作業班(Working Party)의 설치에 합의하고 同年 5월에 中國의 GATT가입에 대한 問題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89년 4월까지 7차례의 作業班 會議가 개최되어 가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9년 6월의 天安門 사태를 계기로 이 작업반 회의는 中止되어 소장상태를 보이다 89년 12월에 8차회의가 재개되었지만 GATT 會員國들은 中國의 經濟制度改革에 대

---

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관세의 경우, 시장경제국에서는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로서 관세의 高低에 따라 수출입량, 수출입가격이 변화하나, CPE국가들의 수출입량은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의 고저는 무역(특히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CPE국가가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기존의 GATT가입국이 CPE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GATT에 가입한 CPE국가중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경우는 관세양허대신 다른형태의 입장료(entrance fee)를 지불해야 했다. 즉, 폴란드의 경우는 "GATT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매년 7%씩 증가시키는(To increase its imports from contracting parities by 7% each year in exchange for the benefits of GATT membership)"형태로 수입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약국으로부터 매년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GATT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GATT가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CPE국의 전례에 따라 수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Ⅲ-1) 中國의 GATT 加入協商 沿革

日 程	主 要 協 議 內 容
1947.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국민당정부)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서명</li> <li>* 23개 창설국가의 하나가 됨.</li> </ul>
1948.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의 PPA(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수락기구설치</li> </ul>
1948.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의 1次修正 議定書 수락과 함께 정식회원자격 취득</li> </ul>
1948.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의 2次修正 議定書 수락</li> </ul>
1949.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의 3次修正 議定書 수락</li> </ul>
1949.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華人民共和國 설립</li> </ul>
1950.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UN사무국에 GATT탈퇴를 통보(1950년 5월 5일 발효)</li> <li>*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GATT와 단절됨.</li> </ul>
1965.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옵저버자격을 신청·허가</li> </ul>
1971.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총회, 중국대표권 회복</li> <li>* 대만의 대표권 박탈</li> </ul>
1971.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의 결정에 따라 GATT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자격 박탈</li> </ul>
197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期 3中全會,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 채택</li> </ul>
198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ITO잠정위원회(ICITO) 참석; 둔켈(DUNKEL) GATT사무총장 선출</li> </ul>
198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GATT 옵저버자격 신청·허가</li> </ul>
1983.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多者間纖維協定(MFA)에 서명, MFA 의무준수를 수락</li> </ul>
198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GATT 特別옵저버자격 부여</li> <li>* GATT 회의와 기타 GATT기구에의 참석 허용</li> </ul>
1984.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 Council, 중국에 대해 모든 GATT기구 회의 참석 허용</li> <li>* 중국,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GATT 장관회의에 대표 파견</li> </ul>
1984.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영국이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85. 5.27 발효)</li> <li>* 1997년 7월 1일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회복</li> <li>* 홍콩 특별행정구는 독립적 관세를 유지하고, GATT와 같은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허용</li> </ul>
198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사무총장 둔켈 중국방문, 중국의 GATT가입에 대해 논의</li> </ul>
1986.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영국의 sponsorship(GATT 규정 26조5항C<sup>56</sup>)에 의한 GATT가입</li> <li>· 중국, GATT사무국장에게 GATT회원국 지위회복에 대한 결정 통보</li> <li>* 중국은 GATT가입 신청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제시</li> <li>① 모든 가맹국으로부터 無條件 最惠國待遇를 부여 받을 것</li> <li>② 中國은 開發途上國이므로 GATT가 기타 開發國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중국에도 부여 할 것</li> <li>③ GATT의 특정 가입국에 의한 對中차별 무역행위를 정지 할 것</li> <li>④ 중국은 新規加入이 아니라 창설 국가의 일원으로 GATT에의 復歸가 인정 되어야 할 것</li> </ul>



〈표 계속〉

日 程	主要 協議 內容
1986. 9.15 ~ 9.20	· 중국,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GATT 장관회의에 참석 * 對外經濟貿易部 部長助理 沈覺人 참가
1987. 2.13	· 중국, GATT에 '中國對外貿易制度備忘錄' 제출 * 경제구조 및 외환제도 개혁, 대외개방정책 추진 수출입 상품에 관한 가격통제 완화를 골자로하고 있음.
1987. 3. 2 ~ 3. 4	· 중국의 GATT가입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에 합의 (3월 4일)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GATT가입 논의가 시작됨. * 작업반(Working Party)의 주요기능
1987. 3.23	① 중국의 무역제도 심의 ② 가입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관한 협정서 초안 작성 ③ 관세양허표 작성을 위한 협의 장소 제공 ④ 중국과 GATT에 관련된 기타문제에 대한 토의 (체약국이 결정하는 절차문제 및 이사회에 건의제출 포함)
1987. 6.19	· 중국, 포르투갈과 마카오문제에 대한 협의 * 1999년 12월 20일 중국의 마카오에 대한 통치권 회복 * 마카오는 特別行政區로서 홍콩모델을 적용
1987. 7.15	· GATT, L/6191號 문건을 통해 중국의 GATT가입 협의를 위한 작업반의 정식 설치를 통보 * 作業班 명칭: 중국의 체약국지위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① 議長: 스위스 경제부 대사 ② 作業班은 참가의사가 있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개방 * 中國對外經濟貿易部 部長助理 沈覺人, 作業班 의장과 회담 * 작업반의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1987.10.22 ~10.24	· 제네바 개최 1차 작업반회의 참석 * 작업반의 작업일정 토론
1987.11.16	· 중국, GATT사무국에 중국의 체약국지위에 관한 작업반에서 제기된 '中國對外貿易制度備忘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담 제출
1988. 2.23 ~2.24 1988. 4	· 2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 * '中國對外貿易制度備忘錄' 심의 개시 · 홍콩特別行政區의 기본법 초안 작성 * 1997년 7월 1일 홍콩반환이후 사회주의 체제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1988. 4.26 ~4.28	· 3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 * '중국대외무역제도비망록'에 대한 2차 구두 답변 실시
1988. 6.28 ~6.30	· 4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 * '중국대외무역제도비망록'에 대한 3차 구두 답변 실시
1988. 9.27 ~9.28	· 5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 * '중국대외무역제도비망록'에 대한 모체약국의 질의에 답변
1988.12. 9	· GATT 사무국, '중국무역제도에 관한 종합문건 SPEC 88.13/ADD.4'을 작성하여 작업반 구성국에 배포
1989. 2.28 ~3. 1	· 6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 * '중국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종합문건'에 대한 1차 평가
1989. 3.16	· EC의회, 'EC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결의 통과 및 중국의 GATT가입 지지

(표 계속)

日 程	主要 協議 內容
1989. 4.18 ~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중국대의무역제도에 관한 종합문건'에 대한 심의 완료</li> <li>* 중국의 가트가입 議定書에 대한 기본문제 논의</li> </ul>
1989.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天安門 사태 발발로 作業班 회의 중지</li> </ul>
1989.12.12 ~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중국의 '治理整頓' 상황 소개</li> <li>*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보충문건 심의</li> </ul>
199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GATT가입 신청서 제출</li> <li>* GATT 33조에 근거하여 'Taiwan, Penghu, Kimen, Matzu 관세영역' 명의로 신청</li> </ul>
1990.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人大, '홍콩 特別行政區의 基本法' 채택</li> </ul>
1990. 5.16 ~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부시 美대통령의 지지로 미국과 MFN연장</li> </ul>
1990. 9.20 ~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중국의 治理整頓 정책과 개혁방향 소개</li> <li>* '중국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보충문건'에 대한 심의 완료</li> </ul>
1991.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카오, 포르투갈의 sponsorship 下에 GATT 회원국 자격 취득</li> </ul>
1991.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중국무역제도에 관한 보충문건(SPEC 88. 13/ADD)제출</li> <li>* 10개년 계획과 8.5계획 요강에서 확정된 경제체제개혁 방향 설명</li> </ul>
1991.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鵬 총리, GATT 회원국 수뇌와 GATT 사무국장에게 書翰 발송</li> <li>* 多者間貿易체제의 결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힘</li> <li>* GATT가입으로 권리와 의무 수행</li> <li>* 대만이 중국의 單獨關稅區로 GATT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li> </ul>
1991.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佟志廣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 제네바방문</li> <li>* GATT사무국장, 개발도상국 회담대표, 주요 GATT회원국, 중국작업반등과 회담</li> </ul>
1992.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중국의 무역제도에 관한 심의 종료</li> <li>* 중국의 GATT가입 議定書 내용 작성 단계로 진입</li> </ul>
1991.10.21 ~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ul>
1992.12. 3 ~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주요내용 본문참조</li> </ul>
1993. 3.15 ~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농업정책, 가격정책, 외환분배, 무역제도의 통일실시, 기업의 무역권한, 상품검사및 표준등에 대해 집중논의</li> </ul>
1993. 5.24 ~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주요내용 본문참조</li> </ul>
1993. 9.28 ~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차 작업반회의 개최(제네바)</li> <li>* 주요내용 본문참조</li> </ul>

자료 : 1. "中國與GATT大事記", 국제상보. 1993.2.6  
 2. Wenguo Cai, "China's GATT Membership: Selected legal and Political Issu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6 No. 1, Feb, 1992, PP. 35-61.  
 3. 大韓民國 駐中大使館, "月刊 韓中經濟情報", 1993 7-8

한 보다 具體的인 約束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中國은 自國의 經濟制度改革 計劃과 市場接近約束을 연이어 제시하였고, 1992년 2월 제10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입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1993년 9월 28-10.1일 현재 15차 會議가 개최 되었다.

##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 가. GATT加入協商과 市場接近 問題

中國은 최근 美國의 市場開放壓력과 中國의 GATT 加入協商과 관련 하여 市場開放의 擴大 및 貿易制度의 改善을 積極的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GATT 가입협상에 對備하여 수차례 市場接近 및 貿易制度改善을 약속하였고, 關稅引下와 HS分類法의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輸入許可制度의 緩和 등 구체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해왔다. 中國정부는 지난 1991년 10월 GATT 作業班이 요청한 貿易制度의 改善現況 및 市場接近約束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提出하였고, 1992년 1월 輸入管理制度의 改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中國政府는 同年 2월 13일 개최된 제10차 GATT 作業班 會議에서 關稅引下와 輸入調節稅 廢止, 貿易法 制定, 輸入許可制 縮小, 貿易政策의 透明性提高 등 貿易制度 改善에 관한 中國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57)</sup>

첫째, 全般的인 關稅水準을 GATT가 要求하는 開途國의 水準까지 점차 引下하고 個別 關稅率은 產業政策 및 經濟發展 水準에 基礎하여 定

56) 26조 5항 C: 本 協定을 수락한 締約國의 어떤 關稅영역이 對外通商관계 및 本 協定에 規定된 기타사항의 處理에 關하여 完전한 自治權을 취득한다면, 責任을 지는 締約國의 동 事實 확인선언에 依하여 동 영역은 하나의 締約國으로 간주된다.

57) 김기홍/조현태, 「中國의 GATT가입과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pp.48-50.

한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225개 품目に 대한 關稅를 引下한데 이어 同年 12월 31일에는 3,371개 품目に 대한 關稅를 引下하였으며, 1993년 12월 31일부터 2,898개 품目に 대한 關稅를 追加로 引下였다. 아울러 1992년 4월 1일부터 輸入調節稅를 廢止하였다.

둘째, 對外貿易法, 반 덤핑법 등 貿易關聯 法規를 早期에 制定하고, 法에 基礎하여 輸入을 管理하고 國際的 慣行에 따라 國內幼稚産業을 保護한다.

셋째, 輸入許可證에 의한 管理商品의 範圍를 縮小한다. 中國정부는 수입허가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품목중에서 46개 품목을 1996년 12월까지 향후 4년간에 걸쳐 段階的으로 撤廢할 計劃에 있다. 일부품목에 대한 輸入規制 또는 禁止를 국제관행에 따라 輸入쿼터制度로 점차 전환하고 수입장려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한다.

네째, 貿易政策의 透明性을 提高하기위하여 輸出入管理에 관한 內部文件을 대폭 整理한다. 수출입관리에 관한 내부분건은 “國際商報”에 연재하는 형식으로 公表한다. 현재 GATT 加入을 희망하고 있는 中國은 貿易政策과 制度上에 있어서 法令의 公布와 施行 등의 透明性 缺如가 가장 큰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면 「內部文件」에 의해 실제로 공포된 규칙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나 무역관련 제도가 자주 변경되고 있고, 무역관련제도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부서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政府는 貿易制度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서 輸出入관련 법령과 규칙, 내부분건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의 무역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하여 GATT 1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sup>58)</sup>

58) 前掲書 p.63.

GATT 10조 : 무역규제의 공표 및 시행

1항, 체결국의 유효한 법규, 사법적 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규칙으

다섯째, 經濟特區를 포함, 전국 각지의 무역제도와 법규를 통일하고,

로서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에 관련되거나, 관세율, 조세, 기타 과징금에 관련되거나, 수출입 및 동대금의 결제에 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련되는 것, 또는 상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전시, 가공, 혼합 및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타국가 및 무역업자가 知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일방체약국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들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법의 시행을 저해케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공사를 불문한 개별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 비밀정보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항, 체약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따라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증가하는 것이거나 수입 또는 수입대금 결제에 대하여 새롭거나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동 조치가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3항, (a) 각 체약국은 본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규, 결정 및 행정규제를 일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각 체약국은 특히 관세와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를 신속하게 심사, 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및 관련절차를 설치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동 재판소 또는 절차는 행정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동 재판소의 판결은 수입업자가 이를 정해진 항소기간내에 상급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前記행정기간에 의하여 실시되며 또한 前記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 단 동기관의 중앙행정관청은 그 결정이 법률에 확립된 원칙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문제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심사를 받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본항(b)의 규정은 본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한 절차로서 행정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정식으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조치를 객관적이고도 공평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일 경우 동절차의 폐지 또는 대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 절차를 적용하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본항(c)의 요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절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GATT협정문」, KOTRA 무공자료 89-38

이를 위해 中國의 實情과 GATT 原則을 고려한 貿易法을 制定할 方針이며, 今後 貿易關聯 政策과 法規는 모두 經貿部가 統一하여 公布하고 實施한다.

여섯째, 輸入代替政策에 관해서는 이미 공포한 1,751개 項目의 輸入代替리스트를 전부 取消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함께 輸入管理는 주로 關稅에 依存하고 행정적 干涉을 최대한 줄여 나간다.

일곱째, 金融, 保險, 海上運送, 民間航空, 貿易 등의 제 3차 산업을 개방하고,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稅 부여에 있어서 內國民待遇를 하며, 單一變動換率制 실시를 위한 制度改善(이에 따라 中國정부는 1994년 1월 1일부터 단일변동환율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등의 措置를 취한다.

#### 나. 中美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198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中國의 對美 貿易黑字는 미국의 中國시장 접근을 둘러싸고 兩國間 通商摩擦을 增幅시킨 直接的인 原因이 되어왔다. 이에따라 1991년 10월 10일 USTR은 中國의 貿易政策과 制度의 透明性缺如, 輸入許可制度, 輸入禁止, 輸入計劃, 輸入檢査制度, 輸入代替政策, 1988년 以後의 關稅引上 등을 不公正 貿易慣行으로 규정하고 美 通商法 301조에 기초하여 美國의 輸出에 影響을 미치는 中國의 市場接近障壁에 대해 公式調査를 실시, 1992년 10월 10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中國이 美國에 輸出하고있는 섬유, 신발, 플라스틱제품 등 39억 달러에 相當하는 製品에 대해 100%의 報復關稅(이들 품목의 既存 關稅率은 3-5%임)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中國도 이에 相應하는 報復措置를 취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92년 10월 10일 中國이「中國政府와 美國政府間의 市場接近에 관한 諒解覺書」에 서명함으로써 1991년 10월 10일 미국의 301조 조사가 개시된 이래 1년간 9차례에 걸친 中美貿易協商은 타결되었다. 이로써 中國은 미국에 대해 쿼터, 수입허가제도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약속하는 등 미국측 요구

에 대폭 양보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보복을 회피하고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中美貿易協商에서 合意된 중국의 市場開放約束은 다음과 같다.<sup>59)</sup>

첫째, 關稅引下

—과일, 식용유, 필름, 소형카메라, 화학제품, 철강, 전자기계 및 부품, 화장품 등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1993년 말까지 대폭 인하한다.

둘째, 쿼터, 수입제한, 수입허가제도, 수입통제 등 非關稅措置의 緩和  
—수입허가제도, 쿼터, 수입제한 등 수입장벽을 1993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철폐한다.

—과일, 밀, 기타곡물, 식용유 등 농산물에 대한 수입통제를 철폐한다.

—수입통제의 자유화일정은 품목별로 다르나 모든 수입허가제도, 쿼터, 수입통제와 규제의 75%를 2년내에 완전히 철폐한다.

—자동차 및 그 부품의 경우 美國企業의 中國內 合作企業에 의한 輸入에 대해서는 즉시 數量制限을 撤廢한다.

세째, 透明性確保

—모든 무역관련법과 제도, 정책, 지침을 신속히 공포한다.(정부조달 물자의 수입계획 등 정보포함)

—대외무역에 관한 내부문건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허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시킨다.

네째, 輸入代替政策의 廢止 및 輸入許可證 發給時 技術移轉 또는 投資要求 撤廢

—수입대체정책을 폐지하고 同種 품목이 중국내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수입허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다섯째, 輸入檢査制度改善

59) 김기홍/조현태, 「중국의 GATT가입과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pp.52~

-12개월내에 감귤, 복숭아, 사과, 포도, 밀, 담배등에 관한 과학적으로 정당화 되지않는 검역상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에 동일한 기준 인 증제도를 적용한다 등이다.

끝으로 이러한 合意事項에 대한 移行與否를 點檢하기 위해 次官級 實務會議의 設置를 約束하였다. 이와 같이 中國의 約束은 中美間 雙務的 입장이라기 보다는 國際經濟秩序로의 編入 즉, GATT 加入을 위한 사전 準備作業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것으로 분석된다.

####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중국의 시장개방문제는 中美間 通商問題로서 뿐만아니라 GATT 加入을 위한 懸案課題로서 계속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市場接近의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現行 輸入管理制度 및 각종 對外貿易體制는 중국의 가트가입을 審議하고 있는 GATT 締約國들로부터 강력한 不滿을 惹起하고 있어 輸入管理制度의 改善 등 根本的인 變化가 要求되고 있다. 輸入管理制度의 改善 등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問題點 등에 대해 各國의 見解와 中國의 立場을 제 12, 14, 15차 GATT 加入 作業班 會議(Working Party)<sup>60</sup>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2차 作業班 회의내용

##### 가) 貿易關聯制度의 透明性

中國에 대한 市場接近의 保障을 위해서는 中國의 貿易關聯制度가 GATT 會員國들에게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主要爭點으로 논의 되었는데, 透明性의 對象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제시되었다.

60) 12차회의 내용 前揭書 pp.31-39, 13, 14차회의 내용 상공부제공.



- 수출 또는 내수용 공산품과 서비스의 生産費用과 價格設定 體系
- 생산비용, 가격, 생산과 관련된 관행(보조금), 대외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
- 中國과 주요 交易對象國과의 貿易規模와 貿易活動
- 商品의 輸送에 관한 情報
- 指令性計劃, 計劃目標值, 輸出入許可基準에 대한 정부의 자료
- 關稅率 변경과 貿易量 그리고 該當관세율 수준에서 徵收된 關稅額에 대한 下部 政府機關의 權限과 行政的 決定事項에 대한 정보등 이에 대해 중국은 營業秘密에 關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透明性和 관련된 GATT 제10조의 규정을 遵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나) 締約國의 中國에 대한 輸入規制措置의 撤廢

중국은 議定書 발효일을 기점으로 모든 締約國들이 中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대해 GATT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數量制限措置와 기타의 輸入制限措置를 撤廢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中國의 加入議定書에 中國商品에 대해 差別的인 반덤핑·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체결국들이 철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체결국들은 중국수입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철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다) 中國의 輸入制限措置 철폐

중국의 무역규범과 규제조치는 정해진 기한내에 철폐되거나 GATT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이문제에 대해 중국은 祖父條項의 適用時點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라) 中國貿易制度에 대한 定期 검토문제

중국의 貿易政策과 貿易制度의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상당한 時差를 두고 실시되는 貿易政策檢討制度(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와는 별도로 중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定期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런 주장은 과거 동구의 CPE국가들이 GATT에 加入할 當時 年例檢討에 관한 조항이 明文化 된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마) 東京라운드 MTN協定 加入問題

중국의 MTN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시기와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측은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MTN 협정중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수입허가절차 협정에의 加入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 3개 MTN협정은 중국의 경제체제에 기인한 불공정경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補助金 支給에 의한 경쟁훼손을 축소시키고 輸入許可節次 協定은 불필요한 수입절차와 수입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貿易自由化에 대한 具體的인 約束

체약국들은 무역자유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가입의 정서에 제시될것을 요청하였다.

- 非關稅障壁 대신 關稅를 통해 對外貿易을 통제할 것
- GATT에 의해 정당화 되지않은 差別的 規制와 數量制限을 제거할 것
- 國營貿易企業의 活動과 內國稅의 내용에 대해 具體的인 約束을 할 것
- 輸出補助金の 廢止와 國家의 價格設定 介入禁止를 약속할 것
- 指令性 貿易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
- 美國과 中國의 市場接近 諒解覺書에 제시된 品質基準 檢查方法이

MFN方式에 의해 여타국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

사) 關稅讓許表와 NTB(非關稅障壁)除去 約束

체약국들은 중국에 대해 UR관세협상에서 開途國에게 요구되는 水準에 근접하도록 關稅引下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정도와 재정수준에 맞추어 關稅를 讓許할 계획임을 밝혔다.<sup>61)</sup>

아) 其他 GATT加入 關聯 論議事項

(1) 加入(accession) 혹은 復歸(resumption)

中國은 GATT의 加入과 관련하여 新規加入(accession)이 아닌 復歸(resumption)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50년 臺灣의 임의적인 GATT탈퇴는 無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加入議定書의 名稱이 “中國의 締約國地位 復歸에 關한 議定書(Protocol of Resumption of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타 체약국들은 新規加入(accession) 또는 參與(participation)라는 용어를 쓰거나 中立的인 표현인 “中國의 締約國 地位에 關한 議定書(Protocol on the Status of China as a Contracting Party)”로 표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up>62)</sup>

(2) GATT의 適用範圍에 關한 問題

(가) 適用地域

첫째, 中國內 관세영역의 정의와 關한 홍콩, 마카오, 대만을 別個의 關

6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 관세제도 참고.

62) 이 문제는 原締約國의 權利(조부조항등)와 關한 경제적 실익과 대만의 지위와 關한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前揭書 p.31.

祖父條項 : GATT의 잠정의정서 및 각 가입의정서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1부 및 제3부의 적용, 현존 국내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부의 최대한 적용”이라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는 데 이를 祖父(grandfather)條項이라 한다.

稅領域으로 하고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GATT 加入 뒤에도 別個의 締約國으로 存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sup>63)</sup>, 이와 관련 加入議定書에 이들과의 “向後 貿易體制(future trade regime)”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둘째, 중국의 貿易制度가 중국의 全域과 모든 出入港(all points of entry)에 同一 하게 適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중국은 GATT 10조 3항에 따라 이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셋째, 經濟特區, 沿岸開放都市와 중국의 여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중국은 이들 지역이 GATT 제 24조 12항<sup>64)</sup>에 근거한 것이며 이들 지역과 중국내 여타 지역과의 차이는 점차 해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 (나) GATT 規範의 地方政府 適用에 대한 問題

GATT 24조에 근거하여 中國의 中央政府가 地方政府의 決定을 無效化 하거나 修正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地方政府의 措置를 無效化 하거나 修正할 수 있는 權限이 中央政府에 있음을 밝혔다.

#### (3) Special Safeguard<sup>65)</sup>

中國에 대해 特別 세이프가드 조항의 明文化가 거론되었으나 作業班

63) 이와 같은 문제는 홍콩의 조차기간 만료와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겠다는 중국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GATT 가입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홍콩은 영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라 1997년 이후에도 독립된 GATT체약국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前揭書, p.32.

64) 24조 12항: 각 체약국은 자국의 지방정부 및 관할기관이 본 협정의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5) 先例로 CPE국가인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의 GATT 加入議定書에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는 GATT 19조에서 규정한 무차별적인 성격과는 달리 CPE국가들은 경제구조가 시장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 교역상대국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기때문이다.

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 조항의 명문화에 대해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 (4) 中國에 대한 開途國地位 賦與문제

중국은 幼稚産業保護의 필요성 때문에 開途國으로서의 GATT 加入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일부 체약국들은 중국에 대해 廣範圍한 開途國地位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國際收支條項<sup>66)</sup>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중국이 취한 조치를 BOP조항인 GATT 제 18조 B항에 의해 그 일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7)</sup>

#### (5) 農業問題

중국은 필요한 경우, 農業開發과 農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 했으나 체약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 2) 14차회의 내용

제14차 회의는 '93년 5.24~26일 GIRARD 의장의 사회로 개최되어 明瞭性 增大를 위한 公式會議 및 議定書 內容 토의를 위한 非公式會議가 진행되었으며 價格制度, 外換割當, 通關檢查基準 등 交易에 直接的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主要議題로 논의 되었다.

---

#### 66) GATT 12조: 國際收支擁護를 위한 制限

1. 체약국은 제11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대외재정상황 개선 및 국제수지 옹호를 위하여 본조 각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허가 상품의 數量 또는 價額을 제한 할 수 있다.

67) 이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중국의 시장개방과 개혁폭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중국은 GSP 供與, 세계은행의 貸出, 中.美 무역협정, 多者間 섬유협정 등에서 開途國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 優待貿易制度 및 少數民族自治區 문제

少數民族自治區 및 기타 經濟的 貧困地域에 대한 特別待遇와 관련 中國측은 同國 憲法上 이들 지역에 대한 財政的, 物質的, 技術的 支援이 명기되어 있으나 貿易關聯 措置는 미미함을 들어 議定書上에 명기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欸약국들이 國境貿易規模가 수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데 대해 中國측은 欸근 欸소련 및 동구국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欸물.유제품 및 일부 기계류에 대해 欸상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95년 以後에는 소멸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締約國들은 國境貿易에 대한 便宜提供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지 않음을 들어 이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의 提出을 요구<sup>68)</sup>하였으며 中國측은 이에 동의 하였다.

나) 貿易關聯制度의 明瞭性

欸약국은 中·美間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諒解覺書)명시내용과 유사한 中國측의 欸료성 欸關 公約(commitment)을 議定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sup>69)</sup>하였으며, 사무국측은 公表(publication)義務와 관련하여서 欸행 GATT 欸行으로는 通告時에 GATT 欸用語로, 公表時에는 自國言語로 충분하나, 中國의 경우에는 公表까지도 GATT欸用語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中國측은 모든 欸령의 欸각적인 欸역공표는 欸술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欸약국은 中國측의 欸業비밀 欸표불가입장과 관련하여 무엇이 欸業비밀인가에 대한 欸확한 欸념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68) 일본측은 欸국이 VIETNAM과의 欸경무역에서 5-7%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欸체적인 欸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 하였음.

69) 本 欸議에서는 中·美間 MOU와 締約國 欸求事項의 欸較表가 摐成,摐布되었으나 締約國들이 欸번 欸의에서 兩者間의 欸체적 차이점 지적 및 摐정서 摐영 摐구를 제시하는데 欸려움이 있음을 摐안 추후 토론기로 함.

대해 중국은 곡물수입의 예를 들어 同 輸入計劃이 외부누출시 외국업체의 cartel형성에 의한 가격인상우려 등을 들어 중국의 비밀개념을 설명하였다.

#### 다) TPRM 問題

체약국들은 의정서상의 commitment에 대한 移行監視와 중국측의 여타 貿易制限措置의 論議 및 經濟改革狀況 點檢등을 위한 定期的인 REVIEW MECHANIS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반 TPRM과는 다른 1-2년 주기의 短期 點檢體制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REVIEW MECHANISM 자체보다는 monitoring을 위한 定期的 點檢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중국의 貿易制度의 透明성과 관련하여 카나다는 13차 회의에서 요청했던 중국무역제도에 대한 자료정리의 필요성을 또다시 거론하였는데, 사무국측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多數의 締約國들은 카나다의 제안에 찬성하였다.<sup>70)</sup>

#### 라) MTN協定 加入 問題

체약국들은 중국이 GATT加入後 가입의사를 밝힌 TBT(技術障壁協定), 關稅評價 協定뿐만아니라 民間航空機 협정 및 政府調達 협정 등의 여타 TOKYO CODES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측은 同國이 궁극적으로 전체 CODES에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들 협정의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동 협정가입이 GATT加入의 前提條件이 되어서는 곤란함을 들어 議定書 보다는 加入 作業班

70) 본 회의의 의정서 작성을 위한 비공식회의에서 아국은 중국측의 의정서 공약 내용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포함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역관련제도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중국측이 최소한 무역관계 주요법령을 가트공용어로 번역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報告書에의 반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 基準 및 檢査(Standards and Inspection)

중국측은 이미 가트加入後 TBT 協定에 加入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中. 美간의 MOU(諒解覺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언급을 作業班 報告書에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欸약국들은 수입품의 稅關檢査時 國內 生産品과 동일한 취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國內生産品과 輸入生産品에 대해 二元化되어 있는 檢査시스템의 一元化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중국은 義務的 基準과 任意的 基準으로 兩分되어 있는 檢査基準과 관련하여 義務的 基準(mandatory standards)은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任意的 基準(non-mandatory standards)은 輸入業者와 供給者의 특별한 契約에 의해 보다 高品質의 제품이 수입되었을 경우, 輸入業者의 依賴를 받은 專門檢査機關이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同 檢査機關은 정부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日本側이 <輸出入商品檢査管理規則> 제 4조<sup>71)</sup>에 檢査基準으로 義務的 基準과 任意的 基準이 함께 열거되어 있는 이유 등을 問題삼았으나 중국측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논의기로 유보되었다.

바) 企業의 對外貿易 參與權 問題

縮約國들은 對外貿易을 希望하는 모든 企業 및 個人에게 對外貿易權 限이 보장되어야 함을 前提로 貿易業許可條件 緩和 및 撤廢, 外換取得

71) 제4조: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수입상품이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종류표에 해당하는 상품일 경우, 수출입계약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품일 경우, 그리고 안전이나 위생에 관련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청하여 상검기구의 검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상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상검기구에 신청하여 공증감정을 하게한다.



自由化 등의 問題를 提起하였으며, 中國側은 이에 대해 同國 정부의 지향목표 역시 欸약국과 다를바 없으며,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점진적으로 對外貿易業體를 늘려나간다는 선에서 公約(commitment)이 가능하다고 皮력하였다. 그러나 同 欸제는 外換取得 自由化 등 他事案과 연계되어 있어 추후 토론키로 유보되었다.

이밖에 일정액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만 貿易業許可를 해준다는 정보에 대한 欸약국들의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생산업체에 대한 무역허가에는 대외무역공사를 통한과거 수출실적이 기준이 됨을 시인하고, 고난도 기계류의 경우에는 2년동안 100만 달러, 일반 기계류는 200만 달러, 기타제품은 4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貿易許可 取得資格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 사) 外換政策

중국측은 94년 이전 전국적인 단일시세 환율시장 확립과 5년내에 換率單一化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후 RMB의 外換노력도 전개할 것임을 들어, 議定書上에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채 一般的인 公約이 가능함을 示唆하였다. 이에 대해 欸약국들은 중국측의 계획에 따를 경우, 外換問題는 1998년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임을 들어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외환조절센터(Swap Center)의 接近保障, 外換使用 承認制度 및 行政指導(Administration-Guidance)등의 廢止를 제안하였다. 이밖에 EC등 일부 欸약국들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400-450억 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國際收支 惡化를 이유로한 IMF 14조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향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과거 同國의 외환보유고에는 中央銀行의 外國企業 預置金 등도 포함되어 실제보다 過多하게 평가 되었으며, 매년 100억 달러이상의 外債償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환보유고는 94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 IMF 8조국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아) 貿易制度의 일률적 適用

체약국들이 地域,稅關別로 서로다른 關稅率의 問題와 少數自治區 지역에 대한 特惠 및 經濟特區의 特別취급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나, 關稅率 問題는 GATT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GATT 加入時點에서 자동적으로 公約(commitment)이 이루어지며, 違反時 가트 紛爭節次에 의해 提訴가 가능하다는 의장의 설명으로 별다른 異議없이 토의가 종결되었다.

자) 其他 GATT加入 關聯 論議事項

(1) 特別 세이프가드條項

미, EC, 스웨덴 등은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여타 시장경제와는 差異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安全裝置로 Special Safeguard條項의 포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同國의 GATT 加入에 따른 義務와 權利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二流 締約國의 지위를 의미하는 本條項의 포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同 문제에 대한 토의에는 應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2) 價格政策<sup>72)</sup>

---

72) 현재 중국의 가격체제는 국가 지령성가격(state price), 국가 지도성가격(state guidance price), 시장조절가격(market-regulated price)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지령성가격은 국가경제 및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당국이 지정한 가격으로서 당국의 承認없이 조정될 수 없는 가격이며, 국가 지도성가격의 경우는 다소 융통성이 있어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사이의 유동성이 보장되고있어 기업이 유동성내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그리고 시장조절가격은 가격관련 정책 및 법규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유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자료: 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china's foreign trade regime, "Spec(88)13/ADD.4/REV.1" p.16.

指導價格(Guidance Price)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중국측은 指令性價格(mandatory price)과는 달리 指導價格은 供給과 需要의 不均衡으로 급격한 價格變動이 있을 경우에만 발동되며, 이 경우 政府에서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약국들은 同 지도가격이 이론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가능한가 하는 適用範圍와 현재 適用品目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측은 수차례의 혼선 및 내부협의 끝에 양털, 펄프, 약초 등 일부 한정된 품목<sup>73)</sup>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현재 적용품목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중국측의 이러한 답변태도에 내부적으로 깊은 疑懼心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추후 계속 토론키로 유보하였다.

### (3) 農業問題

중국측은 農業交易에 있어서 國際的으로도 自由貿易의 原則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역시 自由貿易政策을 推進할 수 없음을 밝히고, 양털과 천연고무에 의존하는 地域經濟 등의 問題로 同 제품에 대한 輸入承認制度의 撤廢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輸出補助金은 이미 廢止되었으나 生産補助金은 市場價格보다 낮은 穀物收買價에 대한 補償次元에서 비료, 디젤 등이 싼 價格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認定하면서, 이는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동하는 전환기적 조치로 北京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음을 강조하였다.

73) 국가 지령성가격(state price): ①국가 구매계약에 의한 농산물의 구매가격(곡물류, 면화, 담배, 누에, 茶) 및 국가계획 木材의 공장인도가격 ②중공업제품의 공장인도가격(원유, 석탄, 전력, 천연가스, 정제유 및 화학비료) ③소비재공산품의 공장인도가격 및 판매가격(식염, 치료약) ④사회간접자본 이용료(철도, 우편, 통신) 국가 지도성가격(state guidance price): ①농산물 구매가격(일부 한약재, 양털, 송진) ②중공업제품의 공장인도가격(일부 chemical mineral 및 그 제품, 일부 비철금속, 특수목적의 대형기계 및 설비) ③소비재공산품의 공장인도 가격 및 판매가격(펄프, 신문용지, 합성재료)

자료: 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china's foreign trade regime, "Spec(88)13/ADD.4/REV.1" p.16.

3) 15차회의 내용

본 회의는 '93년 9.28~10.1 GIRARD의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貿易制度의 明瞭性問題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GATT가입과 관련해서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Special Safeguard와 Review Mechanism의 설치문제가 本格的으로 거론되었다.

가) TPRM 問題

중국의 貿易制度檢討와 관련 중국측 議定書의 Commitment 사항에 대한 定期的인 REVIEW MECHANISM<sup>74)</sup>을 설치하자는 원칙에 대해 중국측은 上記 메카니즘이 既存의 TPRM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締約國들의 주장에 대해 肯定的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同 메카니즘이 二流 締約國地位를 의미하며 또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기존의 TPRM과 상충됨을 들어 존속기간에 대해 일정한 Time-Frame설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締約國들은 Commitment의 이행완료시 同 메카니즘은 자연 소멸케 됨을 들어 이에 반대함으로써 추후 재론키로 유보되었다.

나) MTN 協定加入

미, EC, 캐나다 등은 中國이 民間航空機 협정 및 政府調達 협정에도 加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한 가운데, 中國측은 이미 加入立場을 표명한 5개 TOKYO CODES에의 구체적인 加入時期에 대해 關稅評價 협정, 반덤핑 협정, TBT(기술장벽 협정)협정은 가트가입후 1년이내에, 補助金 및 相計關稅 협정과 輸入許可節次 협정은 UR협상결과 발표이후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중국측은 MTN협정 가입의사는 議定書 보다는 作業班 報告書에 기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무국측

---

74) REVIEW MECHANISM의 주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으나 스위스가 2년안을 제시하였다.

은 GATT 紛爭節次 원용을 위해서는 議定書內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다) 外換政策

체약국들은 외환조절센터에의 接近制限, 外換使用規制 등이 또다른 LISENCING의 역할을 하고있음을 들어 中國의 外換統制가 무역제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同國이 IMF 14條國으로서 과도기동안 外換統制를 許容받고 있음과 GATT 18조 B항에 開途國의 國際收支를 이유로한 輸入制限을 認定하고 있음을 들어 체약국들의 의견을 반박하였으며, 또한 법률적 성격을 지닌 加入議定書에 세세한 사안에 대한 公約(commitment)을 기록하기 보다는 GATT 關聯條項과의 일치, UR協商結果 존중 및 IMF와의 연관성등에 대한 一般的인 commitment만을 의정서에 포함하고,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작업반 보고서에 수록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여타의견이 있을 경우 체약국들이 書面質疑(written suggestion)을 요청하였다.

#### 라) 基準 및 檢査(standard and inspection)

國內製品과 輸入製品 品質檢査間에 구체적인 差異點, 現행 檢査체제의 明瞭性問題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書面質疑에 대해 추후 답변키로 결정되었다.

#### 마) 其他 GATT加入 關聯 論議事項

##### (1) 作業班 報告書의 法的性格

作業班 報告書의 법률적 性格과 관련하여 의장이 議定書 또는 作業班 報告書에의 포함사항을 별도 분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日本側은 작업반 보고서의 法律的 性格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作業班 報告書가 GATT

紛爭 解決節次에 援用된 사실이 없으므로 同보고서에는 事實確認 또는 公約(commitment)내용에 대한 解釋 등만 포함하고 公約 자체는 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法律的 意見을 제시하였다.

(2) 特別 세이프가드 條項

체약국들은 中國의 市場經濟에 대한 不完全성을 들어 加入議定書에 special safeguard條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EC는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이 단기간내 급격히 증가하여 國內産業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國家는 兩者協議를 요청, 相互協議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一方的으로 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다는 要旨의 特別 세이프가드條項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14차 회의때와는 달리 同 문제의 토의에는 應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GATT 자체에도 반덤핑 및 SAFEGUARD조항 등이 있는 상황에서 special safeguard조항을 둘 경우, 중국의 상품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同 조항의 수용에는 반대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特別 세이프가드條項이 여타 의정서 포함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들어 추후 토론키로하고 체약국들이 議定書 文案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農業問題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수출국들은 중국의 양모(wool) 및 천연고무의 輸入制限措置에 대한 존속방침 再考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同 제품이 少數民族 거주지역의 特産物로 同 地域의 생활환경 개선 시까지는 제한이 불가피함을 들고, 同 措置가 GATT 11조 등에 의해 正當化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IV. 結論 및 示唆点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中國의 輸入管理制度는 市場開放과 관련, 中美간 通商摩擦 뿐만아니라 GATT 加入을 위한 懸案課題로서 계속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市場接近의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現行 輸入管理制度 및 각종 對外貿易體制는 中美間 貿易協定을 통해 상당부분 철회키로 합의된 상태에 있고, 또한 中國의 GATT 加入 與否를 審議하고 있는 각 締約國들로부터는 그 이상의 市場開放壓力을 받고있어 中國의 輸入管理制度의 改善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미 中國은 輸入管理制度의 改善과 市場開放의 사전 준비작업으로 關稅의 대폭적인 引下, 輸入計劃의 縮小, 輸入許可證管理制度의 점진적인 撤廢를 약속한데 이어 1994년 1월 1일부터 外換留保制度를 철폐하고 單一變動換率制度를 실시, 外換留保 및 上納制의 撤廢와 外換使用管理制度(額度管理制度)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中國은 앞으로도 계속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기업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西方側의 要求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改善은 향후 對中시장접근의 障壁을 그 만큼 解消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國의 이같은 움직임은 본질적으로는 GATT 加入을 염두한 事前布石임을 감안 할 때, 中國은 가트에의 가입으로 크게 GSP 惠澤 및 開途國 待遇 등을 누리게되 아국경제에 肯定的인 影響 뿐만아니라 아래와 같은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게된다.

첫째, GSP 惠澤에 따른 影響 :

현재 中國은 12개 EC 會員國을 포함한 21개국으로 부터 GSP의 惠澤을 받고 있으나, 세계 최대의 시장인 美國으로 부터는 GSP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어 GATT 加入으로 美國으로 부터 GSP의 惠澤을 받게 될 경우, 中國의 輸出競爭力은 매우 높아져 美國에서의 我國市場 蠶食이 크

게 우려된다.

둘째, 開途國地位에 따른 影響 :

중국은 현재 GATT 加入의 전제조건으로 同國에 대한 開途國 地位를 요구하고 있어 開途國 地位가 認定될 경우, 輸出商品에 대한 일정수준의 補助와 國內 幼稚産業의 保護, 國際收支 條項의 利用 등이 가능하게 되어 輸入抑制을 위한 숨은 非關稅 障壁의 활용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一例로 中國이 단행한 輸入管理制度의 改善 등을 포함한 市場 開放의 裏面에는 增值稅의 調整·引上과 消費稅의 新設 그리고 國內 關聯産業의 發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6개품목과 産業構造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商品 및 國家外貨收支를 威脅하는 商品에 대해 國際貿易慣習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輸入쿼터制의 실시<sup>75)</sup>(1994년 1월1일부터 소급시행)를 決定한 「一般商品 輸入쿼터管理 暫定規定」을 制定하고 있어 市場開放에 따른 자국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輸入抑制策을 마련해 놓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經濟的 實益을 極大化 하기위한 방안으로 中國의 貿易政策과 制度가 市場經濟秩序에 보다 적극적으로 編入 될 수 있도록 中國의 市場開放을 적극 誘導해야함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各國의 對中 關稅讓許 協商<sup>76)</sup>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競爭力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현재 中國市場 進出이 활발하거나 향후 進出潛在力이 큰 품목에 대한 關稅率 引下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GATT 締約國들이 CPE국가인 中國의 對外貿易體制가 일반 締約國들과 달라 中國의 가트가입 전제조건인 하나로 대외무역체제가 가트체제에 맞게 轉換될때까지 中國의 輸出商品에 대해 輸入을 제한할 수 있는 特別 세이프가드제도의 수용을 요구해 온데 대해 조건부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sup>77)</sup> 이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5) 한국경제신문, 1994.1.14

76) 현재 뉴질랜드(종결단계), 캐나다, 터키, 우루과이, 체코, 일본(예비접촉)등이 중국과 관세양허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러 吳儀 對外經濟貿易合作部長이 UR협상에서 채택된 각종 사안들이 GATT에 수용되는 95년 이전까지 GATT에 재가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sup>78)</sup>에 따라 현재까지 가트 作業班에서 논의되온 각종 問題點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함은 물론 중국의 GATT加入에 대한 公約 (commitment)을 의정서에 삽입토록 함으로써 紛爭時 援引할 수 있는 法律的 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貿易政策에 대한 검토 (TPRM)와 관련하여 年例的인 검토방안이나 2년(스위스案)의 단기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規制措置를 解消하는데 力點을 둘 필요가 있다.

---

77) 每日經濟新聞, 1994.1.10

78) China Daily, 1994.1.9

## 參考文獻

- 高麗大學校法學研究所, 中共經濟關係法令集, 韓國經濟新聞社, 1985
- KOTRA, GATT 協定文, 貿公資料 89-38
- 申鉉種, 貿易政策論, 博英社, 1993.1
- IPECK, 北方經濟, 1991.6
- 楊平燮,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2, 1993.7
- 趙顯竣, 中國의 外資企業租稅制度,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4, 1993.9
- 金基洪/趙顯泰, 中國의 GATT加入과 우리의 對應方案, 產業研究院, 1993.4
- 車鐵豪, 現代國際經濟學, 螢雪出版社, 1992.2
- 駐中華人民共和國大韓民國大使館, 月刊 韓中經濟情報, 각호
- 中國의 對外開放과 貿易管理體制改革, 產業研究院, 1989.2.1
- 商工部提供 中國의 GATT 加入關聯資料
- 中國政治經濟辭典
- 貿易協會, 日刊貿易, 1994.1.14(조간)
- 金南斗, 美國의 貿易障壁, KIEP, 1992.8
- 稅收理論與實務, 山東人民出版社, 1989
- 中國財政稅收財務會計實用全書, 濟南科學出版社, 1992.5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法律出版社 1992.11
- 沈樂平/張南鳴, 中國外貿法律指引, 香港出版集團有限公司, 1992.8
- 金雪君/陳志成, 機遇與挑戰,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2
- 孫燕君, 中國加入關貿總協定的利弊及對策, 中國經濟出版社, 1992.10
- 經濟日報信息中心, 重返關貿總協定: 中國人的機遇, 風險與對策, 經濟日報出版社 1992.9
- 張元生, 入關後的中國: 關貿總協定與中國企業, 萬國學術出版社 1992.12
- 穆成材/王新堂, 中國涉外經濟法律法規匯編, 遼寧人民出版社, 1990

- 桂世鏞/王積業, 重返關貿總協定後的中國經濟, 中國計劃出版社, 1993.8
- JETRO, 中國經濟, 1993.7
- 蔡宏明, 大陸外貿自由化措施及其對兩岸經貿交流之影響, 中華經濟研究院, 1993
- 對外經濟貿易合作部, 國際商報, 1992.4.25.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規匯編, 經濟導報社, 1992.6
- 對外經濟貿易合作部國際貿易研究所, 國際貿易, 1990. 제2기, 1991.10, 1992.12
- 中國經濟新聞, 제15기, 1993.4.26
- 人民日報, 1993.12.1
- 經濟日報, 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 1993.12.14
- 經濟日報,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 1993.12.14
- Asia Law & Practice Ltd, China Law & Practice, No 1, 1993
- Wen guo Cai, China's GATT Membership: Selected Legal and Political Issues, Journal of World Trade, 1992.2
- 對外經濟貿易合作部, Business International, 國際商報社, No 61, 63, 66, 69, 71, 73
- GATT, Spec(88)13/Add.4/Rev.1, 4 May 1993
- GATT, 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summing up on informal consultations by the chairman, 28 May 1993

# 附 録



〈附錄 I〉

**中國의 市場開放合意에 關한  
美國通商代表部(USTR)의 發表**  
(1992년 10 월 10일)-中國經濟, jetro, 92.12

칼라힐스 미국통상대표는 금일 대중국수출에 있어서 전례없는 시장진입을 가져오는 중국과의 합의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의에 의해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중국시장의 장벽에 관해, 미국통상법 301조에 기초하여 1년간에 걸친 조사는 종결 되었다. 이합의문서는 아래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요건, 수입관리, 기타수입제한조치에 있어서 광범위한 비관세장벽을 철회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문서에 반영되고 있는 미국수출업자의 주요관심품목은 공업분야에 있어서는 화학제품, 컴퓨터, 집적회로, 의료기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계제품, 전기통신기기, 즉석필름과 즉석카메라, 철강제품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로서는 과실류, 소맥, 기타곡류, 담배 및 식용류제품등이 있다.

힐스통상대표는 『이 역사적인 합의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요구해온 중국의 확대되고 성장하는 시장으로의 진입에 현저한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이합의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중요한 각종부문을 개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 농업계, 노동계에 새로운 호기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도 그 통상관행을 국제관행으로 일치시키고 국제적인 무역제도에 전면적으로 참가한다라는 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상황는 매우좋다.』라고 첨언하였다.

이 합의문서는 또한 중국의 무역제도 운영에 관한 몇개의 중요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중국정부는 수출입제도의 운영에 관한 모든 법규, 규제, 정책, 지도를 공개한다.

(2) 엄밀한 예정표에 따라 중국측의 할당제, 수입제한조치, 수입허가요건, 수입관리조치의 대부분을 철폐한다.

(3) 중국은 특정 농산물, 화학제품, 철강제품, 사진필름제품, 즉석카메라, 기계, 화장품, 과자류, 전기부품등 미국기업의 광범위한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4) 중국정부는 판매, 마케팅 기회에 관한 상업정보(수출업자가 지금까지 입수할 수 없었던 정보)를 공개한다.

(5) 중국정부는 수입대체 대책의 채택과 수입허가요건으로서의 기술이전이나 대중투자의 요구도 실시하지 않는다.

(6)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요건을 논의하는 전문작업 그룹을 창설한다. 중국은 농산물 리스트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으로 부당한 제한조치를 12개월내에 철폐한다.

힐스통상대표와 동지광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금년 6월25일 해임)간에 도달한 합의는 1년에 걸친 조사기간 중에 행해진 9차례의 교섭끝에 나온 것이다.

미통상법 301조에 기초한 1991년 10월 10일부터 USTR이 개시한 시장진입조사에는 투명성부족, 수입허가요건, 수입금지, 할당제, 수입제한, 수입관리 계다가 위생·식물위생기준도 포함한 각종 검정·기준요건등의 장벽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또한 중국의 수입대체정책의 철폐와 88년이래 중국이 인상하고 있는 관세의 인하도 중국측과의 협의내용에 첨가되어 있었다.

92년 8월 21일 USTR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지않을 경우에는 보복관세에 직면하게될 우려가 있는 총 39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측 수입품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미통상법 301조에 기초한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측 수입품에 대해 제제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를 92년 10월 10일까지

결정할 입장에 직면에 있었다. 301조에 기초한 조사가 종결된 지금 통상상의 어떠한 조치도 회피될 전망이다. USTR로서는 향후 미통상법 306조에 기초하여 이번 합의 내용을 중국측이 준수하는가의 여부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 地域情報센터 발간물 목록

### ■ 연구보고

92-01	韓·東歐 經濟協力 增進方案 ('92.12)	鄭重宰	250면
92-02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 ('92.12)	白權鎬	216면
92-03	베트남의 資源開發 戰略 ('92.12)	李文植	136면
92-04	中國의 土地使用制度 分析 ('92.12)	崔秀雄	168면
93-01	中國의 物資流通制度 分析 ('93.12)	崔秀雄	162면
93-02	中國의 改革·開放에 관한 政治的 視角 ('93.12)	李輔根	126면
93-03	쿠바의 經濟現況과 韓·쿠바 協力可能性 ('93.12)	河泰鉉	160면

### ■ 조사보고

92-01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 (1991-1992) ('92.5)	楊平燮/安鍾石	84면
92-02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制度 ('92.7)	尹瓚赫	132면
92-03	中國 外國人直接投資誘致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92.12)	安鍾石/楊平燮	142면
92-04	슬로베니아共和國의 經濟現況 ('92.12)	車相敏	196면
92-05	러시아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現況과 問題 ('92.12)	崔秉熙	156면
92-06	海南省의 經濟 및 投資概況 ('92.12)	盧浩鎭	134면
92-07	체코·슬로바키아 兩共和國 工業構造 分析 ('92.12)	朴相炫	128면
92-08	瀋陽市 投資環境 分析 ('92.12)	朴相守	200면
92-09	中國經濟의 地方分權化 現況과 問題點 ('92.12)	朴月羅	104면
92-10	中國 國營企業의 雇傭·賃金制度 改革 ('92.12)	趙顯竣	174면
92-11	天津市 投資環境 分析 ('92.12)	金京鎬	252면
92-12	中國의 證券市場 現況 ('92.12)	韓亨九	116면

92-13	러시아聯邦 石油·가스産業 ('92.12)	鄭珉旻	184면
92-14	러시아極東地域 經濟概況과 日本の 進出現況 ('92.12)	林虎祥	184면
92-15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92.12)	金奎坂	128면
93-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 課題 ('93.6)	安鍾石	144면
93-02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93.7)	楊平燮	238면
93-03	러시아의 商品流通制度 改革 ('93.9)	尹瓚赫	176면
93-04	中國의 外資企業 租稅制度 ('93.9)	趙顯竣	256면
93-05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制度分析 ('93.10)	權 栗	158면
93-06	上海市 投資環境 ('93.11)	朴月羅	228면
93-07	러시아聯邦 輸送體系 ('93.12)	鄭鎔株	196면
93-08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政策과 現況 ('93.12)	權 栗	105면
93-09	美·中 經濟協力の 現況과 展望 ( '93.12)	安鍾石	144면
93-10	러시아聯邦 鑛物資源開發 制度 ('93.12)	崔聖基	164면
93-11	칠레 經濟現況 ('93.12)	張光翼	116면
93-12	東歐 主要國의 雇用·賃金 制度 分析 ( '93.12)	金奎坂	134면
93-13	日本の 對中 經濟協力 實態 ('93.12)	金京鎬	168면

#### ■ 국별편람

92-01	中國便覽 ('92.9)	562면
92-02	러시아聯邦便覽 ('92.9)	440면
92-03	베트남便覽 ('92.9)	456면
92-04	헝가리便覽 ('92.10)	248면
92-05	폴란드便覽 ('92.10)	324면
93-01	1993 러시아便覽 ('93.5)	522면
93-02	山東省便覽 ('93.8)	422면
93-03	遼寧省便覽 ('93.8)	402면
93-04	우크라이나便覽 ('93.8)	506면

93-05	카자흐스탄便覽 ('93.8)	354면
93-06	불가리아便覽 ('93.8)	356면
93-07	루마니아便覽 ('93.8)	406면
93-08	몽골便覽 ('93.8)	348면
93-09	臺灣便覽 ('93.9)	468면
93-10	멕시코便覽 ('93.9)	378면
93-11	吉林省便覽 ('93.10)	362면
93-12	1993 中國便覽 ('93.10)	638면
93-13	쿠바便覽 ('93.12)	334면
93-14	파키스탄便覽 ('93.12)	440면
93-15	인도便覽 ('93.12)	518면

#### ■ 정책자료

92-01	獨立國家聯合의 '91年 經濟實績 ('92.4)	32면
92-0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具體化프로그램 ('92.5)	40면
92-03	헝가리 輸出入 管理制度 ('92.12)	104면
93-01	主要 開途國 經濟指標 ('93.12)	44면
93-02	中國共產黨 第14期 3中全會 決定과 鄧小平의 南巡講話 ('93.12)	72면

#### ■ 참고자료

92-01	러시아聯邦 議會·政府 人名錄 ('92.11)	278면
93-01	베트남 關稅率表 ('93.3)	248면

---

---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

1993年 12月 29日 印刷

1993年 12月 31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編輯人 姜 興 求

發 行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地 域 情 報 中 心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42-1

君子빌딩 14層

印 刷 오름시스템(주) 273-7011

---

---